

WTO 쌀 재협상 대비
주요협상국 동향과 입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2003. 12.

세계농정연구원

WTO 쌀 재협상 대비 주요 협상국 동향과 입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 최 용 규 (세계농정연구원 원 장)

연 구 원 : 조 방 환 (세계농정연구원 부원장)

연 구 원 : 유 병 호 (한 성 대 학 교 교 수)

연구보조원 : 리 금 (세 계 농 정 연 구 원)



세 계 농 정 연 구 원
Global Agriculture Policy Institute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WTO 쌀 재협상 대비 주요 협상국 동향과 입장분석 및 대응전략 ” 연구용역과제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03 12 1

제출자: 세계농정연구원장

재협상 대응방안 (요약) 목차

1. 재협상을 둘러싼 환경

가. 2004년 쌀 재협상 개황

나. 세계 쌀 시장동향

다. 재협상 관련 주요국가 쌀 시장 현황

라. 우리나라 쌀 시장 현황

2. 대상 주요국의 동향파악을 위한 활동

가. 주요국가별 면담자 및 면담일정

나. 국가별 면담내용

다. 평가

3. 재협상 대응방안

가. 협상목표

나. 협상전 필요한 조치

다. 전략과 대응방안

2004 쌀 재협상 현황과 대응방안 (요약)

1. 재협상을 둘러싼 환경

가. 2004년 쌀 재협상의 개황

-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에 근거한 2004년 쌀 재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을 타협하는 협상임.
-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수출국들에게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도로 우리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함.
- 관세화 유예기간에도 쌀에 부과될 (잠정적) 관세는 계속 감축 (Shadow reduction)되기 때문에, 유예기한이 도래하여 쌀 관세화를 이행할 경우 부과하게 될 쌀 관세는 낮아지게 됨(예상 관세상당치의 10%). 다만 2005년 이후의 구체적인 관세감축율은 현재 진행 중인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

나. 세계 쌀 시장동향

- 2002/03년 (추정치)
 - 재배면적 : 전년대비 3% 감소한 147.14백만 ha.

- 생산량 : 전년대비 4% 감소한 381.8백만 톤.
 - 소비량 : 전년대비 0.6% 감소한 407.6백만 톤.
 - 기말재고량 : 전년대비 20% 감소한 106.1백만 톤.
- 국제 쌀 가격은 최근 1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수출물량 감소로 인해 향후 국제 쌀 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세계 쌀 교역량은 26.9백만 톤 이상으로 추정됨.
 - 쌀 품종별 교역량을 살펴보면, 장립종 쌀 75%, 중단립종 쌀 11%, 향미 9%, 그리고 찹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다. 재협상 관련 주요국가 쌀 시장 현황

- 2004년 쌀 재협상 주요 상대국 : 4개국 (미국, 중국, 호주, 태국)
 - 미국 : 2003년 쌀 수출량 320만 톤이며, 이 중에서 중단립종 쌀 수출량은 21%인 67만 톤임.
 - 중국 : 2003년 쌀 수출량은 225만 톤이며, 중단립종 쌀은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량은 50만 톤 이하로 추정됨.
 - 호주 : 2003년 쌀 생산량의 85%인 50만 톤을 수출하며,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확기가 4-5월임.
 - 태국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 2003년 800만 톤을 수출.
- 쌀 관세화 유예 → 쌀 관세화 이행국 : 일본(1999년), 대만(2003년)
 - 일본 : 1999년 4월 쌀 관세화로 이행하였고, TRQ 수입량은 기

준년도 평균소비량의 7.2%인 68.2만 톤임. 국영무역 (OMA방식) 비중이 85%임.

- 관세율: 종량세('99.4) 351.17엔/kg(세율 환산시 약 490% 수준)

- 관세화 이후 Out Quota의 수입실적은 전무한 상태

- EU,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이의 제기 - 결국 수용

- 대만 : 2003년 1월 쌀 관세화로 이행하였고, TRQ 수입량은 기준년도 평균소비량의 8%인 12.6만 톤임. 국영무역 비중이 65%임.

- 관세 45NT\$/kg(세율 환산시 562% 수준)

- 주요국인 미국, 호주, 태국 등이 이의를 제기, 아직까지 미결상태

- 관세화후 총 24.4만톤 수입. 130NT\$/kg 수준의 고품질미(국내가 22NT\$/kg) 수입이 급증

○ 필리핀은 2004년 쌀 관세화로의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쌀 부족으로 인해 1995년 이후 계속해서 MMA 물량을 초과하여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는 실정이 다름.

- 이행연도가 95.7.1부터 2004.6.30 이므로 재협상 개시가 우리보다 7개월 여유

라. 우리나라 쌀 시장 현황

○ 공급과잉으로 쌀 재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MMA 쌀 수입이

1995/96년부터 시작되어 쌀 재고량은 더욱 늘어나 2001/02년 기말재고량은 1,447천 톤(재고율 27.2%)에 달하였음.

○ 2002년 기준 80kg당 산지 쌀 가격이 159,508원으로 MMA 수입 쌀 평균가격 32,351 원의 약 4.9배 수준임. 특히 중국 삼강평원 지역의 산지 쌀 가격은 일반쌀 16달러,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쌀 20달러로 일반쌀은 12%, 유기쌀은 15% 수준에 불과함.

○ UR 합의에 의거한 MMA 쌀 수입은 1995년 5.1만 톤을 수입한 이래 2002년 15.4만 톤으로, 2004년에는 기준년도 평균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20.5만 톤임.

○ 1995-2002년 쌀 수입량은 중단립종 80%, 장립종 20%.

- 중단립종 : 61.3만톤 (중국 54.2만톤, 미국 5.4만톤, 호주 1.7만톤)

- 장립종 : 15.7만톤 (태국 9.7만톤, 인도 5.1만톤, 베트남 0.9만톤)

○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방출하여 연간 7만 톤이 소비됨에 따라 재고량이 점차 증가하여 1996년 3.7만 톤, 2002년 27.6만 톤, 그리고 2004년에는 51.0만 톤을 상회할 전망이다.

⇒ **국내 소비량감소와 수입쌀 재고누증은 앞으로 생산 및 수입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

2. 대상 주요국의 동향파악을 위한 활동

가. 주요 국가별 면담자 및 면담일정

○ 미국 (2003.7.1 - 7.2)

- Robert Cummings: 미국 쌀 연합회 부총재
- Jim Gruel: USDA 국제무역정책 담당 부처장보
- Jason Hafemeister: USTR WTO 농업협상과장
- P. Drazek, C. Thorn, M. Sloan: DTB 법무법인 대표

○ 중국 (2003.10.10 및 10.29)

- Lee, EunHang(이은행):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부대표(10.10)
- Huang, JiKun(황계곤): 중국과학원 중국농업정책센터 주임(원자
바오 총리 농업정책자문으로 수시 접촉. 11.4 중국 국내쌀 값
급등 관련 총리에 설명, 10.29)
- Cheng, GuoQiang(정국강):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10.29)
- Ni, HongXing(니홍형): 중국농업부 WTO 과장(10.29)
- Li, NingHui(이녕휘):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농업정책과
장(10.29)

○ 호주 (2003.11.6)

- Craig Burns 농림수산부 무역정책 총괄관리
- Dennis Gebbis 농림수산부 무역정책 국제농업선임자문(WTO협
상)

○ 태국 (2003.11.10)

- Vichai Sriprasert 태국 쌀 수출협회 회장

○ WTO (2003.10.10 및 11.28)

- Paul Shanahan. WTO 농업국 수석참사관(10.10)
- Frank Wolter(11.28)

○ 일본 (2003.12.4 및 12.11)

- 다카기 농림어업 금융공고 총재(전 농림성 사무차관, 쌀 관세화 협상당시 식량청 장관으로 총괄, 12.4)
- 하야시 마사노리 일본곡물협회 상무이사(전 농림수산성 국제부장, 12.11)

○ 대만 (2003.12.10)

- Chen, HsiHwang(전 대만 농업위 위원장)

나. 국가별 주요 면담내용

○ 미 국

- 최근 한국의 미국쌀 구매에 감사(정부, 업계)
- 미국 쌀 업계는 자신들의 기대치(expectation)에 충족(meet)하면 적극적인 협상용의.
- 대만에서와 같이 일반 소매점에서 미국 쌀 판매 허용 필요.
- 한국이 쌀 재협상을 DDA와 동시에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 등 UR에서와 같이 오히려 불리.(법무법인, better not to do).

- 한국의 관세수준에 관심(USTR)

○ 중 국

- 재협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실정이며 향후 여러 가지 대응방안 강구 필요.
- 한국의 TSG제도는 충분히 인식, 앞으로 운용에 크게 관심.

○ 호 주

- 호주는 쌀재배면적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국에서 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 일정수준만 배려할 경우 재협상에 응할 용의.
- 일본의 쌀 구매제도에 불만(특히 구입시기가 호주의 수확시기와 일치하지 않은 점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점).

○ 태 국

- 업계는 관세화 희망.
- 태국북부에 중단립종 쌀을 시험생산 중으로 향후 중국과 경쟁가능.

○ 일 본

- 당시(99.4) 관세화 이유로 재고 증가로 더 이상의 MMA는 큰 부담이 되었고, 차기 협상에서 쌀로 인한 협상력 약화 우려(Free Hand 필요)
- 관세화 결정전에 농민단체에서 유예, 관세화 수용에 대한 의견

- 수렴 요청, 원할 경우 재협상 용의 있음을 표명
- 한국 유예협상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요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지를 잘 검토할 필요

○ WTO 농업국

- 한국 쌀 재협상 관련 절차는 28조 4항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 인정, 앞으로 작성할 계획
- 유예협상을 할 경우 2004년내에 해야 할 것임

○ 대 만

- 미국이 유예조건으로 16%의 MMA를 요구하여 관세화 시행
- 국내가격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고품질미의 수입급 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 막대한 가격지지 정책이 불가피. WTO제소도 감수
- 너무 부족한 준비로 관세화는 실패임을 인정

다. 면담결과에 대한 평가

- 미국과 호주는 중국의 경쟁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협상에 큰 관심 표명.
 - 자국산 쌀의 안정적 공급과 한국내 소매점에서 판매를 희망.
- 미국의 협상력은 UR때과 달리 농무부보다 무역대표부(USTR)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은 정책중심의 실무자선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대응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한국의 TSG제도 도입에 우려 표명

- 관세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큼

○ 태국은 최근 중국내 쌀값 상승에 크게 고무된 듯,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

○ 일본의 경우 재협상 여부를 농민들에게 결정토록 함으로 반발 최소화 및 관세화 협상의 정당성 확보

○ 대만의 경우 관세율까지 무리하게 조정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고품질미의 대량 수입으로 정책판단 미숙

- MMA의 무리한 증량은 재고 등 큰 부담

○ WTO 재협상 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기 작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 **MMA물량 증량, 국별배정외 일반 소매점 판매가 하나의 협상 Card로 활용 가능성 확인(단, SBS제도는 요구할 것 같지 않음).**

⇒ **중국의 관세화 요구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고율관세로 부과하더라도 고급양질미의 대량 수입 예상.**

3. 재협상 대응방안

가. 협상 목표

○ 일정 기간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

- 재협상 상대국의 요구(shopping list)가 지나칠 경우 쌀 관세화 이행도 불가피함을 전제.
 - 다만 관세화할 경우에도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접근물량과 관세 상당치(TE)를 산정할 필요성(대만의 경우)이 있으며
 - 반면 여러 조건을 감안한 상대국의 이익이 상당부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나. 협상 전 필요한 조치

- 2004.1.1부터 시작되는 쌀 재협상 절차에 대하여 WTO 사무국이 마련하기 전에 우리가 진행절차에 관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
 - 협상 개시일자 및 순서 등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준비.
- 미국, 중국보다 먼저 우리 안을 WTO 사무국과 접촉하여 조기에 전달.
 - 미국과도 우리안을 사전 협의
- 협상절차에 관한 내용이 결정되기전에 필리핀과도 협의, 이 문제에 대한 필리핀측의 동조 획득 필요.

다. 전략과 대응방안

(1) 유예협상시 주요 상대국들의 예상되는 요구 사항

- 미국 : ① MMA 물량을 8%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대만의 사례)
 - ② MMA 물량 중 최소 50% 점유율을 요구.(일본 50%, 대만 70%)
 - ③ 국영무역과 민간수입 비율을 50:50으로 요구.(중국 가입협상시 중, 단립종 50:50, 장립종 90:10, 대만의 경우 65:35)
 - 민간 수입분 소매점에서 판매 허용

- 중국 : 한국쌀 시장 개방시 자국이 가장 큰 수혜국임을 내세워 관세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유예협상을 수용할 경우라도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 또는 그 이상을 요구.

- 호주 : ① 일정수준의 MMA 자국 배정
 - ② 구매시기를 자국산 생산시기와 일치
 - ③ 소매점에서 판매 허용

- 태국 : 관세화 요구 또는 최소한 장립종 안정구매

(2) 기본전략

- 국내 농민단체에게는 유예 또는 관세화의 우선 선택권을 부여

- 유예를 전제로 협상하되 상황에 따라 관세화할 수 있음을 상대방 국가 및 농민단체에 분명히 함.
- 협상 상대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국, 중국, 호주, 태국을 중점 추진하고 여타국은 요구시 시차를 두고 적절히 대응함.
 - 특히 미국과 중국을 우선 배려.
- 각국에 Carrot과 Stick을 적절히 구사함
-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Card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상, 하한선을 미리 설정
 - ① 국별 쿼타와 유사한 방법: 일국당 최대 40% 이하(미국, 중국, 호주, 태국 배려)
 - ② MMA 증량(4% ~ 8%): 최대 8% 이하(일본, 대만의 관세화 사례에서 보듯 8%이상은 국내 재고부담 등 향후 원활한 미곡운영에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
 - ③ MMA 운영의 국영무역 대 민간무역의 비율: 70:30
 - 단 민간부문의 국내수입분은 국내외 가격차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부과금 징수를 전제
- 협상 상대국과는 “Bad Cop/Good Cop Strategy”를 구사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3) 각국별 대응전략

(가) 미 국

○ 설득 논리

- 한국쌀의 관세화시 수입은 전량 중국산이 될 것임을 강조
-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 MMA도 전량 국영무역으로 국별 물량 배정의 고려나 민간판매도 보장 못함

○ 협상 Card

- Country Quo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량의 MMA 보장(최대 40%)
- 시장접근물량 증량(최대 8%)
- MMA중 일정량 국영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전환(최대 30%)

(나) 중 국

○ 설득 논리

- 장기적으로 한국쌀 시장은 중국이 독점
- 관세화시 중국산 쌀의 대량 수입이 예상, 이 경우 한국은 잠정피해구제제도(TSG)도입이 불가피, 그렇게 되면 향후 10년간(2014까지) 중국쌀 수입이 거의 어려울 전망
- MMA관리도 전량 국영무역임으로 중국 쌀수입의 배려 불가

○ 협상 Card

- Country Quo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량보장(최대 40%)
- MMA 증량(최대 8%)
- MMA중 일정량 민간수입전환(최대 30%)

(다) 호 주

○ 설득 논리

- 쌀 관세화시 모든 수입은 중국의 독점 가능성이 큼
- MMA 물량의 전량이 국영무역이므로 국별 배정 고려나 민간판매의 보장을 못함

○ 협상 Card

- Country Quo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량 보장(10% 수준), 또는 일정량을 호주 수확시기(4~5월) 직후 구매해 줌.
- MMA 증량(최대 8%)
- MMA중 일정량 민간판매 허용(최대 30%)

(라) 태 국

○ 설득논리

- 관세화시 수입되는 모든 물량을 중국의 독점 가능성이 큼
- 현재 및 장래의 MMA관리는 전량 국영무역이므로 장립종 구매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함으로 한국의 쌀시장 개방시 태국쌀 수입가능성이 전무.

○ 협상 Card

- MMA중 일정량 장립종 구매 보장(최대 10%)
- MMA증량(최대 8%)
- MMA중 일정량 민간판매 허용

(4) 종합 대응방안

(가) 대외적 대응

- 최우선적으로 재협상 절차에 대한 시안 마련 WTO에 전달
 - WTO통보 전에 미국과는 사전 협의
- 재협상 의사 통보후 주요 관심 표명국과 접촉 국내정치 일정(4월 총선)을 설득 본격협상을 4월 이후로 연기
- 협상 Card가 되는 유예기간, MMA물량 증량, 국별 배정물량 비율, 국영무역과 민간판매허용 비율 등에 대한 가상되는 조합(combination)을 치밀하게 마련(Simulation)
 - 특히 민간수입판매의 경우 일정액의 부과금으로 국내산과 가격차가 나지 않도록(가급적 높게 책정) 하고 이의 불가피성을 반드시 설득
- 미국을 최우선 협상 상대국으로, 중국을 2차 상대국으로 하여 두 나라는 늦어도 2004년내(가급적 2004. 9월까지)에 완료하고, 호주, 태국, 기타국 순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국,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불가피할 경우 2005 초기까지도 끌고 갈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deadline tactics).

- 특히 미국의 협상력은 USTR이 우위인점을 감안하여 농업협상라인(Allen Jhonson→Jim Murphy→Jasen Hafemeister)과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수임. 단 USDA는 Jim Gruet가 한국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협상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동시에 우호적 관계유지가 필요.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Bad Cop/Good Cop)으로 사전 분위기 조성 뿐 아니라 협상기간 중에도 강약을 적절히 구사
 - 미국, 호주, 태국은 민간업계가 강한 점을 고려, 민간활동을 확대
- 가장 반대가 예상되는 중국의 경우는 정·관계의 인맥(관시왕:關係網)을 활용, 정책결정의 핵심 실무자들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접촉, 유리한 협상 분위기 조성

(나) 국내적 대응

- 적절한 시기에 농민단체들과 수시 협의
 - 정부의 재협상 의지가 있음을 우선 분명히 하되, 상대국이 지나친 요구를 해올 경우 관세화도 불가피함을 설득
 - 다만 구체적인 협상에 대하여는 정부에 위임 요구
- 미가 인하 등 각종 정책을 조기에 실시 관세화에 대비
 -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로의 전환
 - 대외 협상용으로도 활용
- 협상팀의 조기 확정 및 협상종료시까지 유지

- 협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총책임자에 실무자까지 Team을 구성, 협상 종료시까지 대응
- 특히 미국 생산, 유통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 공동 대처 필요

2004 쌀 재협상 현황과 대응방안

1. 2004년 쌀 재협상
2. 세계 쌀 시장동향
3. 재협상 관련국가 쌀 시장현황
4. 우리나라 쌀 시장현황
5. 주요 대상국 동향파악을 위한 활동
6. 재협상 대응방안

〈참고자료〉

〈부 록〉

1. 2004년 쌀 재협상

가. 쌀 재협상의 배경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재협상을 시작하려는 것은 UR 농업협정문의 관세화 특례조항인 부속서 5B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UR 농업협정문에 의거 실시될 2004년 쌀 재협상은 1995-2004년 동안 지속해 온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을 타협하는 협상으로, 만약 우리가 2005년 이후에는 쌀 관세화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게 되면 불필요한 협상임.
- 쌀 재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이 해당사국들과 타협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만일 재협상과정에서 이 해당사국들의 요구조건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라면 우리는 쌀 재협상을 중단하고 200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 그러나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수출국들에게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도로 우리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UR 농업협정문에 의거 2004년 우리나라의 MMA 수입물량으로 책정된 20.5만 톤보다 더 많은 물량의 쌀을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해야 할 것임. 이러한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는 수출국들이 수용 가능할 정도이어야 하므로,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조치가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접근물량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를 지금 예측하기는 곤란한 실정임.
-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제10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개도국의 품목별 최소감축율 10%가 적용됨. 따라서 관세화 유예기간인 1995-2004년에도 쌀에 부과할 수 있는 (잠정적인) 관세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2004년 이후 관세화로 이행했을 경우에 부과될 쌀 관세는 UR 합의 당시 설정된 관세의 9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됨. 만약 쌀 재협상을 통해서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그 시기가 도래하여 관세화 유예조치를 종료하고 쌀 관세화를 이행할 경우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쌀 관세는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에도 계속 낮아지게 됨. 다만 구체적인 관세감축율은 현재 진행 중인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

- 그리고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경우에도 이미 책정된 시장접근 물량에 해당하는 쌀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함. 즉 2004년 쌀 재협상에서 MMA 수입량 20.5만 톤보다 늘어난 물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합의하고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 유지할 경우, 그 늘어난 물량만큼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나. 쌀 재협상 전략의 필요성

-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수출국들이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시장접근물량의 최대한도는 WTO/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로 이행하고 선진국 지위에서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쌀 수입량이 될 것임.
- 2003년 9월의 칸쿤 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WTO/DDA 협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로서, 언제 협상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한 실정임. 따라서 WTO/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우리나라가 선진국

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도 농업부문에서의 관세감축의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음.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수출국들이 요구할 시장접근물량의 최대한도를 가 능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2004년 쌀 재협상과 관련, 관세화가 유리할 것인가 또는 관세화 유예가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얼마 동안 연장할 것인가 하는 점과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대가로 수출국들에게 지불해야 할 시장접근보장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달려 있음. 과거 관세화를 유예했던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면, 관세화 유예에 대한 대가는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3% 정도로 판단됨. 만약 일본이 UR 합의 당시 쌀 시장을 관세화 했더라면 시장접근물량이 5%가 되었을 것이지만, 쌀 관세화를 유예했기 때문에 2000년까지 시장접근물량이 8%로 확대하도록 하였음. 대만의 경우에도 2002년 WTO 가입조건으로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시장접근물량을 8%로 보장하였음.
- 2004년 쌀 재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상관련 상대국들의 쌀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쌀 재협상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쌀 재협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관세화로 이행한 경험이 있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인가를 재협상해야 하는 필리핀 등에 대한 쌀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2. 세계 쌀 시장동향

가. 쌀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

- 2002/03년¹⁾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4% 감소한 정곡기준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정곡기준임) 381.8백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1996/9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세계 쌀 생산량은 1999/2000년에 사상최고 수준인 409.3백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3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한편 2003/04년 세계 쌀 생산예상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89.3백만 톤으로 추정됨.
- 세계 벼 재배면적은 2000/0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1/02년 이후에는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02/03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재배면적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계 벼 재배면적은 1995/96년보다도 적은 147.14백만ha를 기록했음.
- 그러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3,900kg/ha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쌀 생산량은 1995/96년보다는 5% 이상 많고 1997/98년과 비슷한 수준인 (조곡기준) 576.28백만 톤이었음. 그러나 2002/03년 세계 쌀 생산량은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1999/00년 (조곡기준) 611.28백만 톤에 비하면 약 94% 수준임.

1)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를 의미함.

<표1> 세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연도별	재배면적(백만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조곡,백만톤)
1995/96	149.43	3,660.2	546.92
1996/97	150.10	3,789.8	568.83
1997/98	150.96	3,821.1	576.84
1998/99	151.64	3,822.2	579.59
1999/00	153.31	3,987.4	611.28
2000/01	153.86	3,916.6	602.60
2001/02	151.23	3,952.8	597.79
2002/03	147.14	3,916.4	576.28

자료 : FAOSTAT Database

- 세계 쌀 생산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지, 소비, 그리고 기후 조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서쪽으로는 파키스탄에서 동쪽으로는 필리핀에 이르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쌀 생산량의 절반을, 여기에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개국의 쌀 생산량을 합치면 세계 쌀 생산량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2002/03년 세계 쌀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세계최대의 쌀 생산국인 중국이 5년 연속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 제2위 쌀 생산국인 인도가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15%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2001/02년 인도의 쌀 생산량은 사상최고 수준인 78백만 톤이었음.) 그 외에도 2002/03년에는 쌀 수출국으로는 호주와 파키스탄이 그리고 쌀 수입국으로는 한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 등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태국, 베트남, 미국, 이집트 등의 쌀 수출국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의 쌀 수입국들은 2002/03년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03/04년에는 세계 쌀 생산량이 2002/03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인도의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8%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그러나 기후여건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2/03년 세계전체의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0% 줄어든 106.1백만 톤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쌀 기말재고량이 1999/00년 이래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결과이며 추정재고량 106.1백만 톤은 1987/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이처럼 세계전체의 쌀 기말재고량이 대폭 감소하게 된 요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감소하기 때문임. 여기에다 인도의 기말재고량도 전년대비 40% 줄어든 13.9백만 톤이 될 전망이다. 기타 기말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버마, 브라질 등이 있음.
- 한편 2003/04년 세계전체의 쌀 소비량은 사상최고 수준인 421.3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다 동기간 세계의 쌀 생산량은 390백만 톤 이하에 머물 전망이다. 따라서 2003/04년 세계전체의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2% 정도 감소한 82.8백만 톤으로 1983/8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나. 쌀 가격동향

- 세계전체의 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다 쌀 생산량은 1999/00년 이래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쌀 가격은 최근 1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7월까지의 태국정부의 쌀 수출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국제 쌀 가격이 약간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2년 가을부터 대풍작을 기록한 인도가 쌀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국제 쌀 가격은

약세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 봄에는 5-10% 정도의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있었음.

- 인도는 2001/02년 사상최고의 쌀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여기에다 인도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쌀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인도의 쌀 수출물량이 증가함.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2002/03년 쌀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후 수출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따라서 향후 국제 쌀 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2003년 후반에는 중단립종 쌀 가격이 톤당 5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음.
-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단립종 쌀 가격은 2001/02년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톤당 22달러 정도 하락했었으나, 2002년 일본으로의 쌀 수출량이 전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한국과 대만으로 쌀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단립종 쌀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다. 쌀 교역동향

- 2003년²⁾ 세계 쌀 교역량은 26.9백만 톤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전년의 교역량 27.9백만 톤에 비해서는 1백만 톤 줄어든 수준임. 그리고 쌀을 옥수수, 밀 등의 다른 곡물과 비교하면, 교역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7%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임.
- 2002/03년에는 세계 1,2위 쌀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의 쌀 생산량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세계전체의 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2003년 세계 쌀 교역량도 전년보다 줄었음. 2004년에도 국제 쌀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인도와 미국의 수출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며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함.

서, 쌀 교역량은 2003년보다 1백만 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태국, 버마, 베트남, 미국 등의 주요 쌀 수출국들은 2002/03년 대규모 풍작으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2003년 쌀 수출량이 증가할 것임. 그러나 가뭄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쌀 수출량이 줄어들 것임.
- 2003년 세계전체의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1백만 톤 줄어든 26.9백만 톤으로 추정됨. 주요 쌀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은 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쌀 수입량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임.
- 2003년에는 브라질, 방글라데시, EU,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예멘 등의 쌀 수입량이 늘어나고,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세네갈 등의 쌀 수입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2004년에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의 쌀 수입량은 줄어들고,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등은 쌀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의 쌀 교역량을 품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장립종 쌀 교역량이 75% 이상, 중단립종 쌀 교역량이 11%, 향미 교역량이 9%, 그리고 찹쌀 교역량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쌀 수출국 가운데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장립종 쌀과 소량의 香米를, 미국은 장립종 쌀과 중단립종 쌀 모두를, 그리고 호주는 중단립종 쌀을 수출함. 주요 쌀 수입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란,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EU 등은 주로 장립종 쌀을 수입하고, 한국, 일본, 터키, 요르단 등은 중단립종 쌀을 수입하며, 그리고 미국, EU, 중동 지역 등에서는 香米를 수입함.

- 세계전체의 쌀 교역에서 중단립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 수준임. 중단립종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 3개국 정도이며 중단립종 쌀을 수입하는 국가로는 일본, 한국, 북한, 대만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이외에도 터키, 요르단, 체코,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등이 소량을 수입하고 있음.

3. 재협상 관련국가 쌀 시장현황

- 2004년 쌀 재협상 주요 상대국 : 4개국 (미국, 중국, 호주, 태국)
- 쌀 관세화 유예, 쌀 관세화 이행국 : 일본(1999년), 대만(2003년)
- 그리고 필리핀은 2004년 쌀 관세화로의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실정임.

가. 미국

- 2002/03년 (추정치)
 - 벼 재배면적 : 전년대비 3% 감소한 320만 에이커
재배면적 감소는 주로 남부에서 발생하고 있음.
 - 쌀 생산량 :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678만 톤.
 - 쌀 교역량 : 수출은 전년대비 6% 증가한 320만 톤.
수입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42만 톤.
 - 쌀 소비량 : 전년대비 2.7% 증가한 400만 톤.
 - 기말재고량 : 124만 톤(장립종 87만톤 70%, 중단립종 37만톤 30%).
- 2002/03년 벼 재배면적 (쌀 생산 6개주)

알칸사스 : 152만 에이커 (11.5만 에이커 감소)
 텍사스 : 20.6만 에이커 (1만 에이커 감소)
 미주리 : 20.1만 에이커 (0.6만 에이커 감소)
 루이지애나 : 54만 에이커 (0.6만 에이커 감소)
 미시시피 : 24.5만 에이커 (1만 에이커 증가)
 캘리포니아 : 52.3만 에이커 (5만 에이커 증가)

○ 알칸사스를 비롯한 중남부 5개주는 대부분 장립종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됨.

○ 2002/03년 쌀 품종별 생산량

- 계 : 전년대비 0.5% 감소한 678만 톤.
- 장립종 쌀 : 전년대비 5% 감소한 504만 톤.
- 중단립종 쌀 : 전년대비 14% 증가한 174만 톤.

○ 2003/04년 쌀 품종별 생산예상량

- 계 : 전년대비 7% 감소한 631만 톤.
- 장립종 쌀 : 전년대비 8% 감소한 465만 톤.
- 중단립종 쌀 : 전년대비 5% 감소한 166만 톤.

○ 미국은 세계 쌀 수출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1995년 14.39%, 1998년 11.41%, 2003년 12.02%)

○ 2003년 미국의 쌀 수출량 : 3.2백만 톤.

- 1996/97년 이래 6년 연속으로 증가함.
- 장립종 쌀 : 2.53 백만 톤으로 79%.

- 중단립종 쌀 : 0.67 백만 톤으로 21%.

- 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고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아서 국내소비량의 12% 정도를 수입하고 있음. 특히 고품질 향미인 jasmine 쌀과 basmati 쌀을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나. 중국

- 쌀은 중국 곡물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며, 총 인구의 60%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음.
- 공급이 수요보다 많지만, 품질이 낮은 장립종 쌀은 재고가 누적되는 반면 품질이 높은 중단립종 쌀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함.
-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관세할당으로 쌀 수입이 가능해짐. 그러나 국제 쌀 가격이 중국내 쌀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수입보다 수출이 많음.
- 중국은 세계 벼 재배면적의 약 23%, 그리고 쌀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임.
- 2002/03년 (추정치)
 - 벼 재배면적 : 전년대비 3.3% 감소한 28.18백만 ha.
재배면적 감소는 주로 장립종 쌀 재배지역에서 발생함.
 - 쌀 생산량 : 전년대비 1.5% 감소한 123.2백만 톤.
 - 쌀 수출량 : 전년대비 29% 증가한 225만 톤.

- 중국의 쌀 생산에서 중단립종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짐. (1980년 11%, 1990년 16%, 2000년 29%로 증가)
- 1999년 중국정부가 품질이 낮은 조생장립종 쌀에 대한 수매정책을 중단함으로써, 양쯔강 유역에서 중단립종 쌀을 재배하기 시작함.
(2001년 지앙수성 벼 재배면적의 80%가 중단립종 쌀임.)
- 중국의 쌀 수요는 1인당 소비량 감소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추세로 중단립종 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과거 중국 쌀은 미국이나 일본 쌀보다 품질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조곡의 질도 낮고 도정기술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임. 최근에는 품종개량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단립종 쌀을 생산하고, 도정기술 향상을 위해서 외국기업들과 합작투자로 최신기계를 도입, 새로운 도정공장을 운영함.
- 중국 쌀은 낮은 생산비와 품질향상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중단립종 쌀 수출량은 1999년, 2000년, 2001년 각각 53.44만 톤, 58.07만 톤, 35.18만 톤으로 당해연도 생산량의 1.53%, 1.74%, 1.10%를 차지했음.
- 쌀 교역에서 수입량 감소와 수출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임.
 - 2010년 예상수입량 : 연평균 6% 감소하여 12.2만 톤.
 - 2010년 예상수출량 : 연평균 5.8% 증가하여 438.5만 톤

다. 호주

- 2002/03년 쌀 생산량 : 75.1만 톤 (중단립종 쌀이 80%).
남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10월에 파종하고 4-5월에 수확함.
- 쌀 생산농가는 약 2,500호 정도로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400 ha 임. 그러나 쌀 생산농가들은 5-7년 주기로 윤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호당 평균 벼 재배면적은 60-80ha 수준임.
- 쌀 생산은 New South Wales주의 리베리나 평원에 집중. 2002/03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15만 ha임. 한편 ha당 쌀 생산량은 8,000kg 이상으로 세계최고 수준임. (1998/99년 9,400kg/ha, 2002/03년 8,500kg/ha)
- 생산된 쌀의 15%만 국내에서 소비, 나머지 85%를 수출함. 2003년 50만 톤의 쌀을 수출할 전망으로, 세계 쌀 수출에서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호주의 쌀 수출은 쌀 생산자들이 설립한 SunRice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짐.

라. 태국

- 세계 제1의 쌀 수출국인 태국은 관개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1년 2작이 가능하고, 쌀 생산비가 매우 낮음. 북부고지대에서 중단립종 쌀과 찹쌀을 소량 재배하고, 대부분이 장립종 쌀임.
- 2002/03년 (추정치)
 - 벼 재배면적 : 전년과 동일한 999만 ha
 - 쌀 생산량 : 전년대비 3.7% 감소한 16.5백만 톤.
 - 쌀 수출량 : 전년대비 23% 증가한 800만 톤.

마. 일본

- 1995년부터 MMA로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쌀 관세화로 2003년에는 65만 톤을 관세할당(TRQ)으로 수입 예정임.
- 1999년 관세화 당시 351.17엔/kg의 종량세를 부과했으며, 2000년부터는 341엔/kg으로 낮춤. 2001년 중반이후 국제 쌀 가격 하락으로 현재 TRQ를 초과하는 쌀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임.
- 관세화 유예기한(2000년 말)에 앞서 일본은 1999년부터 관세화로 이행하였음. 당시 일본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 2000년에는 MMA 물량이 기준년도 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75.8만 톤으로 늘어남.
- 수입쌀 재고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1998년 10월에는 42만 톤에 달함. 수입쌀 재고 증가에 대한 부담이 일본이 관세화를 선택한 한 가지 이유였음. 예정보다 2년 빨리 관세화로 이행했기 때문에, 2000년 TRQ 수입량은 기준년도 소비량의 7.2%에 해당하는 68.2만 톤으로 줄어듦.
- 일본의 쌀 수입은 OMA방식과 SBS방식 두 가지임.
OMA방식 수입쌀 비중은 1995년 97.4%, 1998년 81.0%, 2001년 85.3%를 차지함. SBS방식 쌀 수입량은 1995년 1만 톤, 1998년과 1999년에는 12만 톤, 그리고 2000년부터는 10만 톤으로 일정함.
- 일본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에서 주로 쌀을 수입하고 있음. 2001년 기준 수입국별 점유율은 미국 47.7%, 태국 19.1%, 중국 17.8%, 그리고 호주 14.7%임.

- OMA방식 : 미국 51.5%, 태국 22.3%, 호주 15.8%, 중국 9.6%
- SBS방식 : 중국 65.7%, 미국 25.2%, 호주 8.5%, 태국 0.4%

- 태국산 香米와 인도산 basmati 쌀이 TRQ 초과물량으로 연간 100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음.

바. 대만

- 1998년 WTO 가입협상을 시작하면서 일본 수준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여, 2000년 MMA수입량은 8%임. 2002년 1월 WTO 회원국이 되었음.
- 1997-99년에는 연평균 10만 톤의 정부보관 쌀을 수출, 국내적으로 쌀 생산 감축정책을 실시, 그리고 2000년 11.5만 톤, 2001년 12.6만 톤의 쌀을 수입하여 WTO 가입에 대비함.
- WTO에 가입하던 2002년 기준년도 평균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12.6만 톤을 MMA로 수입했으며, MMA 수입량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69%였음.
- 대만은 2003년 관세화로의 이행을 선택했으며, TRQ 수입물량을 2002년과 동일한 12.6만 톤으로 책정함.
- 2003년 TRQ 수입량 중 65%는 정부 직접조달, 35%는 민간업자에게 입찰로 수입허가권을 배분함. TRQ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NT\$45/kg의 종량세를 부과함.

사. 필리핀

- 인구증가율이 2.5%로 비교적 높고 2002년 1인당 쌀 소비량은

99kg으로 다른 동남아국가들의 120-140kg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쌀 소비량은 증가할 여력이 많음.

- 쌀 가격이 높아(필리핀 쌀 가격은 베트남과 태국 쌀 가격의 약 2-3배임) 소비를 억제하고는 있지만 쌀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2002년 경우 소비량은 9.1백만 톤이고 생산량은 8.6백만 톤임), 1995년 이후 계속해서 MMA 물량을 초과하여 쌀을 수입하고 있음.

4. 우리나라 쌀 시장현황

가. 쌀 시장 수급동향

- 쌀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재배면적은 1,050천 ha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10a당 생산량은 1997/98년에 518kg으로 최고 그리고 2002/03년에는 471kg으로 떨어짐. 2002/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4,927천 톤이었음.
- 소득향상에 따른 육류 및 밀가루 소비증가로 인하여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1990년 119.6kg에서 2000년 93.6kg, 2002년에는 87.3kg으로 낮아짐. 총 소비량도 1990년 이래 연평균 0.5% 감소추세를 보여 1995/96년 5,557천 톤에서 2000/01년 5,151천 톤으로 줄어듬. 다만 2001/02년에는 대북 쌀 지원 545천 톤이 발생했기 때문에, 총 소비량이 5,557천 톤으로 증가했음.

<표2>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재배면적 (천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 (정곡,천톤)	소비량 (정곡,천톤)	재고량 (정곡,천톤)
1995/96	1,056	445	4,695	5,225	244
1996/97	1,050	507	5,323	5,070	497
1997/98	1,052	518	5,450	5,216	806
1998/99	1,059	482	5,097	5,278	722
1999/00	1,066	495	5,263	5,114	978
2000/01	1,072	497	5,291	5,151	1,335
2001/02	1,083	516	5,515	5,557	1,447
2002/03	1,053	471	4,927	n.a.	n.a.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3

- 쌀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쌀 재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1995/96년과 1998/99년을 제외하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았고, 그리고 MMA 쌀 수입이 1995/96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쌀 재고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2001/02년 기말재고량은 1,447천 톤에 달하였음.
- 1995/96년 쌀 재고량은 244천 톤으로 재고율이 4.7%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00년에 재고량 978천 톤 재고율 19%로 FAO 권장 적정재고율 14-15%를 초과하였고, 2000/01년에는 재고량 1,338천 톤 재고율 25.9%로 확대되었음. 2001/02년에는 가공용 방출가격 인하, 주정용 공급, 대북 지원 등 정부의 강력한 재고처리대책에 힘입어 재고량 1,447천 톤 재고율 27.2%로 다소 증가하는데 그쳤음.

나.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 분석

-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 쌀 80kg 생산비가 10만원 이상인 농가비율이 34.6%,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농가비율이 44.6%, 그리고 8만원 미만인 농가비율이 20.8%임. 우리나라 농가의 쌀 생산비

구성을 살펴보면, 토지용역비가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노력비 21.4%, 농구비 14.7%, 비료농약비 9.4% 순서임. 한편 일본 농가의 쌀 생산비 구성은 노력비가 32.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농구비 17.0%, 토지용역비 13.9%, 비료농약비 9.5% 순서임.

- 2002년 기준으로 MMA 수입쌀의 평균가격은 80kg당 32,351 원인데 반하여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59,508 원으로 수입 쌀 가격의 약 4.9배 수준임. 한편 중국의 헤이룽장성 삼강평원지역의 산지 쌀 가격은 일반쌀이 톤당 200달러 (80kg당 16달러) 그리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쌀이 톤당 250달러 (80kg당 20달러) 정도로서 우리나라 산지 쌀 가격과 비교하면 일반쌀이 12%, 유기쌀이 15% 수준에 불과함.
-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쌀 생산에서의 규모화와 토지용역비의 감축이 필요함. 생산 규모화를 위해서는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개선 및 확대 그리고 노령농가의 조기은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함. 쌀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용역비를 줄이는 것이 생산비 감축에 필요하지만, 농지가격 하락은 농업인의 자산가치를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국내 쌀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쌀 관세화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농산물가격지지 중심의 정책을 농업인 소득지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다. 쌀 수입 현황

- UR 합의에 의거 MMA 쌀 수입은 1995년 인도산 장립종 51천 톤을 수입한 이래 2002년에는 154천 톤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

는 기준년도 평균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205천 톤으로 늘어날 것임.

<표 3> 우리나라 MMA 수입쌀 수급동향 (1995-2002)

(단위 : 천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입 량	소계	51	64	77	90	103	103	128	154
	비율*	1.0	1.25	1.5	1.75	2.0	2.0	2.5	3.0
	중단립종 (도입국**)	-	64 (중)	59 (중)	84 (중)	80 (중)	85 (중)	110 (중,미,호)	131 (중,미)
	장립종 (도입국***)	51 (인)	-	18 (태)	6 (태)	23 (베,태)	18 (태)	18 (태)	23 (태)
소비량		-	78	57	78	74	67	65	75
재고량		51	37	57	69	98	134	197	276

* : 기준년도 대비 MMA 수입량 비율, ** : 중국, 미국, 호주, *** : 태국, 베트남
 자료 : 한국 쌀 연구회, 쌀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 및 정책적 전략

- 1995-2002년 동안 수입된 쌀 770천 톤 중에서 중단립종이 613천 톤으로 80%, 그리고 장립종이 157천 톤으로 20%를 차지함. 중단립종 쌀은 중국에서 542천 톤을 도입했으며, 2001년에 미국 23천 톤 그리고 호주 17천 톤을 수입했고 2002년 미국에서 31천 톤을 수입했음. 장립종 쌀은 1995년 인도에서 51천 톤을 그리고 1999년에 베트남에서 9천 톤을 수입한 것을 제외한 97천 톤을 태국에서 도입하였음.
- MMA로 수입된 쌀은 가공용으로 (80kg당 중단립종 50,040원, 장립종 37,720원, 합성미 48,810원) 저가에 방출되고 있으며, 연간 소비량은 약 70천 톤 수준임. 따라서 수입 쌀 재고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1996년 37천 톤에서 2002년 276천 톤으로 늘었으며, 2004년에는 510천 톤을 초과할 전망이다.

5. 대상 주요국의 동향파악을 위한 활동

가. 주요 국가별 면담자 및 면담일정

○ 미국 (2003.7.1 - 7.2)

- Robert Cummings: 미국 쌀 연합회 부총재
- Jim Gruel: USDA 국제무역정책 담당 부처장보
- Jason Hafemeister: USTR WTO 농업협상과장
- P. Drazek, C. Thorn, M. Sloan: DTB 법무법인 대표

○ 중국 (2003.10.10 및 10.29)

- Lee, EunHang(이은행):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부대표(10.10)
- Huang, JiKun(황계곤): 중국과학원 중국농업정책센터 주임(원자
바오 총리 농업정책자문으로 수시 접촉. 11.4 중국 국내쌀 값
급등 관련 총리에 설명, 10.29)
- Cheng, GuoQiang(정국강):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10.29)
- Ni, HongXing(니홍형): 중국농업부 WTO 과장(10.29)
- Li, NingHui(이녕휘):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농업정책과
장(10.29)

○ 호주 (2003.11.6)

- Craig Burns 농림수산부 무역정책 총괄관리
- Dennis Gebbis 농림수산부 무역정책 국제농업선임자문(WTO협
상)

○ 태국 (2003.11.10)

- Vichai Sriprasert 태국 쌀 수출협회 회장

○ WTO (2003.10.10 및 11.28)

- Paul Shanahan. WTO 농업국 수석참사관(10.10)
- Frank Wolter(11.28)

○ 일본 (2003.12.4 및 12.11)

- 다카기 농림어업 금융공고 총재(전 농림성 사무차관, 쌀 관세화 협상당시 식량청 장관으로 총괄, 12.4)
- 하야시 마사노리 일본곡물협회 상무이사(전 농림수산성 국제부장, 12.11)

○ 대만 (2003.12.10)

- Chen, HsiHwang(전 대만 농업위 위원장)

나. 국가별 주요 면담내용

○ 미 국

- 2001년부터 한국이 미국 쌀 구매한 것에 감사(정부, 업계)
- 미국 쌀 업계는 자신들의 기대치(expectation)에 충족(meet)하면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음.
- 대만에서와 같이 한국도 일반 소매점에서 미국 쌀 판매를 허용할 필요 있음.

- 한국이 쌀 재협상을 WTO/DDA협상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UR협상에서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양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것임.(법무법인, better not to do).
- 쌀 관세화 시 한국의 관세수준에 관심이 큼(USTR)

○ 중 국

- 아직은 쌀 재협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재협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대응방안 강구할 것임.
- 한국의 대중국 TSG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이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큰 관심을 표명함.

○ 호 주

- 호주는 수리시설의 제약 등으로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국에서 쌀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호주 쌀에 대해서 일정수준 배려할 경우 재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
- 현행 일본의 쌀 구매제도에 불만을 표명(특히 일본의 쌀 구매시기가 호주의 수확시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관리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과 일반 소매점에서 수입쌀을 판매할 수 없는 점).

○ 태 국

- 업계는 쌀 관세화를 희망.
- 장립종 쌀은 국제경쟁력이 충분한 실정이고, 현재 북부지방에서 중단립종 쌀을 시험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단립종 쌀도

중국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일 본

- 당시(99.4) 관세화로 이행하게 된 이유로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MMA를 늘리면서 관세화 유예조치를 유지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고, 차기 WTO협상에서 쌀로 인하여 협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함. (Free Hand 필요)
- 관세화를 결정하기 전에 농민단체에 대하여 유예조치 지속과 관세화 수용 양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농민단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를 위한 재협상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힘.
- 한국 쌀 재협상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요구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WTO 농업국

- 한국의 쌀 재협상 관련 절차는 28조 4항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작성할 계획임.
- 유예협상을 할 경우에는 2004년에 시작하고 가능하면 완료해야 할 것임.

○ 대 만

- 미국이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MMA물량을 16%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대만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세화를 선택함.
- 국내가격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 미의 수입이 급증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임.
- 그 결과 대만정부는 WTO에 제소될 위험을 감수하고서 수매 등의 가격지지 정책을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음.
- 너무 부족한 사전준비로 인하여 쌀 관세화 조치는 실패임을 인정.

다. 면담결과에 대한 평가

- 미국과 호주는 쌀 시장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어느 수준 보장될 수 있다면 쌀 재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할 전망이다.
- 자국산 쌀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일반소매점에서 수입쌀을 판매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미국의 협상력은 UR때과 달리 농무부보다 무역대표부(USTR)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정책담당 실무자들과의 면담결과로는 쌀 재협상에 관해서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된 상태로서, 아직까지 구체적 대응계획이 없으며 한국의 TSG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함.
- 쌀 관세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큼
- 태국은 최근 중국내 쌀값 상승에 크게 고무된 듯,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쌀 관세화를 희망함.
- 일본의 경우 쌀 재협상 여부를 사전에 농민들에게 알리고 또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 농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화 협상의 정당성을 확보함.

- 대만의 경우 관세율까지 무리하게 조정하면서 관세화를 이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고품질미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판단이 미숙했다는 점이 판명됨.

- MMA물량을 늘리는 것은 재고관리에 큰 부담

- WTO 재협상 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기 작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 **MMA물량 증량, 국별 배정 외에도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여부가 하나의 협상 Card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단, SBS제도는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국의 관세화 요구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고율관세로 부과하더라도 고급양질미의 대량 수입이 예상됨.**

6. 재협상 대응방안

가. 협상 목표

- 재협상의 우선순위를 2005년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데에 둠.
- 그러나 재협상 상대국의 요구(shopping list)가 지나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쌀 관세화로의 이행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다만 200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할 경우에도 시장접근물량 (TRQ)과 관세상당치(TE) 산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대만의 경우)이 있음.
- 반면 여러 조건을 감안한 상대국의 이익이 상당부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나. 협상 전 필요한 조치

- 2004.1.1부터 시작되는 쌀 재협상 절차에 대한 규정을 WTO 사무국이 마련하기 전에 우리가 진행절차에 관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해야 함.
 - 시안에서는 재협상 개시일자 및 협상순서 등을 4월 총선 등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함.
- 미국이나 중국보다 먼저 우리 안을 작성하여 WTO 사무국에 전달하고, 사무국과 접촉을 통해 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확정되기 전 미국과도 우리안을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재협상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필리핀과도 협의, 이 문제에 대한 필리핀 측의 동조를 획득하는 것도 필요함.

다. 전략과 대응방안

(1) 재협상 시 주요 상대국들의 예상되는 요구 사항

- 미국 : ① MMA 물량을 8%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대만의 사례)
 - ② MMA 물량 중 최소 50%를 자국에 배정할 것을 요구. (일본 50%, 대만 70%)
 - ③ 국영무역과 민간수입 비율을 50:50으로 요구. (중국의 WTO 가입협상시 중단립종 50:50, 장립종 90:10, 그리고 대만과의 가입협상 시 65:35)
 - 민간부문의 수입쌀 일반소매점에서 판매 허용

- 중국 : 한국쌀 시장 개방시 자국이 가장 큰 수혜국임을 내세워 관세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그리고 유예협상을 수용할 경우라도 미국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 또는 그 이상을 요구.

- 호주 : ① 일정수준의 MMA물량을 자국에 배정할 것을 요구
 - ② 쌀 구매를 자국산 생산시기인 4-6월에도 실시할 것을 요구.
 - ③ 일반소매점에서 수입쌀 판매 허용

- 태국 : ① 쌀 관세화를 우선적으로 요구
 - ② 만약 관세화 유예시에는 MMA물량의 일정비율을 장립종 쌀 구매에 배정할 것을 요구.

(2) 기본전략

- 국내 농민단체에게는 유예 또는 관세화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부여함.
-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재협상을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음을 상대방 국가 및 농민단체에 분명히 밝힘.
- 협상 상대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국, 중국, 호주, 태국을 중점 추진하고 여타국은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시차를 두고 적절히 대응함.
 - 특히 미국과 중국을 우선 배려.
- 각국에 Carrot과 Stick(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함.
- 협상수단으로 사용할 Card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상하한선을 미리 설정함.
 - ① 국별 쿼타와 유사한 방법: 국가당 최대 40% 이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배려)
 - ② MMA증량(4% ~ 8%): 최대 8% 이하(일본, 대만의 관세화 사례에서 보듯 8%이상은 국내 재고부담 등 향후 원활한 미국운영에 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
 - ③ MMA 운영의 국영무역 대 민간무역의 비율: 70:30
 - 단 민간부문의 국내수입분은 국내외 가격차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부과금 징수를 전제

○ 협상 상대국에 대해서는 “Bad Cop/Good Cop Strategy”를 구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협상상대국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도시킴으로써 자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드는 Bad Cop 역할을 담당할 민간부문의 참여가 바람직함.

(3) 각국별 대응전략

(가) 미 국

○ 설득 논리

- 만약 쌀 관세화로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쌀 수입은 대부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임을 강조
- 관세화 시 TRQ 물량을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 전량 국영무역으로 국별 물량 배정을 고려한다거나 수입쌀의 일반소매점 판매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는 불리할 것임.

○ 협상 Card

- Country Quo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일정비율을 미국에 보장 (최대 40%)
- 시장접근물량 증량(최대 8%)
- 시장접근물량의 일정비율을 국영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전환 (최대 30%)

(나) 중 국

○ 설득 논리

- 관세화 유예조치는 일정기간에 한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입쌀 시장은 중국이 독점할 전망이다.
- 관세화시 중국산 쌀의 대량 수입이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은 잠정피해구제제도(TSG)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TSG제도의 도입은 향후 10년간 (2014년까지) 중국에서의 쌀 수입은 거의 불가능해 짐.
-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도 전량 국영무역임으로 인해 중국 쌀 수입에 대한 배려가 불가능해 짐.

○ 협상 Card

- Country Quo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일정비율을 중국에 보장 (최대 40%)
- 시장접근물량 증량 (최대 8%)
- 시장접근물량의 일정비율을 일반무역으로 전환 (최대 30%)

(다) 호 주

○ 설득 논리

- 만약 쌀 관세화로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쌀 수입은 대부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임을 강조
- 관세화 시 TRQ 물량을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 전량 국영무역으로 국별 물량 배정을 고려한다거나 수입쌀의 일반소매점 판매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호주에는 불리할 것임.

○ 협상 Card

- Country Quo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량 보장 (시장접근물량의 10% 수준), 또는 일정량을 호주의 쌀 수확시기(4~5월) 직후에 구매함.
- 시장접근물량 증량 (최대 8%)
- 시장접근물량의 일정비율 일반무역으로 전환 (최대 30%)

(라) 태 국

○ 설득논리

- 만약 쌀 관세화로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쌀 수입은 대부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임을 강조
- 현재 및 장래의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는 전량 국영무역이므로, 장립종 쌀 구매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쌀 시장 개방시 태국쌀의 수입가능성은 거의 없음.

○ 협상 Card

- Country Quo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일정비율을 태국에 보장 (최대 10%)
- 시장접근물량 증량 (최대 8%)
- 시장접근물량의 일정비율 일반무역으로 전환

(4) 종합 대응방안

(가) 대외적 대응

- 최우선적으로 재협상 절차에 대한 시안을 마련해서 WTO사무국에

전달.

- WTO통보 전에 미국과 사전 협의절차가 필요

○ 재협상 의사를 통보한 후 관심을 표명한 주요국들과 접촉하여, 국내정치 일정(4월 총선)을 고려 재협상은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함.

○ 협상 Card가 되는 유예기간, 시장접근물량 증량, 국별 배정물량 비율, 국영무역과 민간판매허용 비율 등 여러 가지 경우를 가상하여 각각의 조합(combination)을 치밀하게 마련(Simulation).

- 특히 민간수입 판매의 경우 일정액의 부과금으로 국내산과 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가급적 높게 책정) 하고 이의 불가피성을 반드시 설득

○ 미국을 최우선 협상 상대국으로, 중국을 2차 상대국으로 하여 두 나라와는 늦어도 2004년 내(가급적 2004. 9월까지)에 완료하고, 호주, 태국, 기타 국가 순으로 적절히 대응함.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불가피할 경우 2005년 초까지도 협상을 끌고 갈 것을 염두에 둬. (deadline tactics).

- 특히 미국의 협상력은 USTR이 우위인점을 감안하여 농업협상라인(Allen Jhonson→Jim Murphy→Jasen Hafemeister)과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수임. 단 USDA는 Jim Gruef가 한국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협상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동시에 우호적 관계유지가 필요.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Bad Cop/Good Cop)으로 사전 분위기 조성 뿐 아니라 협상기간 중에도 강약을 적절히 구사

- 미국, 호주, 태국은 민간업계의 영향력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업계를 상대로 접촉활동을 확대
- 가장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중국의 경우는 정·관계의 인맥(관시왕:關係網)을 활용, 정책결정의 핵심 실무자들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접촉, 유리한 협상 분위기 조성

(나) 국내적 대응

- 적절한 시기에 농민단체들과 수시 협의
 -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재협상 의지가 있음을 우선 분명히 하되, 상대국이 지나친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쌀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도 불가피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득
 - 다만 구체적인 협상에 대하여는 정부에 위임 요구
- 미가 인하 등 각종 정책을 조기 실시함으로써, 쌀 관세화에 대비
 -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지지정책으로의 전환
 - 대외 협상용으로도 활용
- 협상팀의 조기 확정 및 협상종료시까지 유지
 - 협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총책임자에 실무자까지 Team을 구성, 협상 종료시까지 대응
 - 특히 미국 생산, 유통 전문가도 반드시 포함 공동 대처 필요

<참 고 자 료>

1. 주요국별 쌀 교역동향
2. 쌀 재협상 관련국별 현황

1. 주요국별 쌀 교역동향

가. 주요 수출국

- 태국 : 세계 제1위의 쌀 수출국으로서 2002/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16.5백만 톤이며, 2003년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1.5백만 톤 늘어난 8백만 톤 이상이 될 것임. 한편 2001/02년 태국은 벼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에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2004년 태국의 쌀 수출예상량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8백만 톤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태국이 수출하는 쌀의 대부분은 장립종 쌀이며, 이종 고품질 쌀은 EU, 중동지역,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품질이 낮은 쌀은 베트남,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과 경쟁하면서 수출하고 있음.
- 베트남 : 통상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으로서 2002/03년 쌀 생산량은 27.6백만 톤으로, 2003년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0.9백만 톤 증가한 4백만 톤으로 추정됨. 베트남이 수출하는 쌀은 전량 장립종 쌀로서 2002년에는 공급상 문제와 인도와의 수출경쟁으로 인하여 쌀 수출량이 3.1백만 톤으로 저조했음.
- 중국 :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인 중국의 2002/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백만 톤 줄어든 123.2백만 톤으로 1997/98년 이래 6년 연속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정부가 품질이 낮은 조생종 장립종 쌀 생산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주된 이유임. 그러나 중국은 국내소비용 및 수출용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에도 쌀 수출량은 전년보다 0.5백만 톤 늘어난 2.25백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 2002/03년 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 감소했기 때문에, 쌀 생산량도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6.78백만 톤으로 추정됨. 2003년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0.1백만 톤 늘어난 3.2백만 톤으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미국이 수출하는 쌀의 80%는 장립종 쌀이며, 나머지 20%가 중단립종 쌀로서 중단립종 쌀은 주로 일본, 터키, 요르단 등지로 수출하고 있음. 그리고 2001년부터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2002년에는 대만으로 미국의 중단립종 쌀 수출이 시작되었음.
- 인도 : 2002/03년 인도는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2001/02년 쌀 생산량에서 15% 정도 감소한 78백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쌀 수출량도 전년보다는 2.5백만 톤 줄어든 4백만 톤이 될 것임. 그러나 2003년 쌀 수출예상량 4백만 톤도 인도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04년에는 쌀 수출예상량이 3백만 톤 수준으로 대폭 떨어질 전망이다. 2001/02년 사상최고의 쌀 풍작으로 인도정부는 쌀 수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쌀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음. 인도에서 생산하는 쌀 중에서 고품질의 basmati 쌀은 미국, EU, 중동지역으로 그리고 저품질의 장립종 쌀은 러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됨.
- 파키스탄 : 2002/03년 쌀 생산량은 3년 연속 가뭄으로 인하여 1994/95년 이래 최저수준인 3.85백만 톤에 머물렀으며, 따라서 수출량도 전년대비 0.4백만 톤 줄어든 1.1백만 톤으로 추정됨. 파키스탄 정부는 쌀 가격지지, 영농자재 공급,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쌀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생산하는 쌀의 약 1/3이 품질이 좋은 basmati 쌀임. 고품질의 basmati 쌀은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고 품질이 낮은 장립종 쌀은 태국, 베트남 등과 경쟁하면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버마 : 2002/03년 쌀 생산량은 10.4백만 톤으로 사상최고 수준이었던 2000/01년의 10.8백만 톤에 근접하였고, 2003년 수출 또한 전년대비 0.5백만 톤 늘어난 1.5백만 톤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버마가 생산하는 쌀은 대부분이 품질이 낮은 장립종 쌀이며, 쌀 수출도 전량 장립종 쌀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버마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나, 60년대 이후에는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음. 그동안 버마정부는 쌀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나, 최근에는 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 수출량을 확대하고 있음.
- 호주 : 2002/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75.1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1995/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쌀 생산량은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 수출은 전년보다 10만 톤 늘어난 50만 톤으로 예상됨. 2003년 수출예상량 50만 톤은 1999년 호주의 쌀 수출량 67만 톤에 비해서는 25% 정도 줄어든 수준임. 호주는 남반부에 있기 때문에 10월에 파종하고 4-5월에 수확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생산하는 쌀의 대부분은 고품질 중단립종 쌀임. 호주의 쌀 수출은 일본이 주요 수출국이며(일본 수입쌀 시장의 18%를 점유), 기타 파푸아뉴기니, 터키, 요르단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이집트 : 2002/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3.8백만 톤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단립종 쌀임. 쌀 생산에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3년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50만 톤으로 지중해 동부 연안국들이 주요 수출시장임.
- 남미 지역 :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2대 쌀 수출국으로, 다른 남미국가들에 중단립종 쌀을 수출하고 있음. 2002/03년 아르헨티나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1만 톤 그리고 우루과이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백만 톤으로 추정됨. 2003년 아르헨티나 쌀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35만 톤,

우루과이는 전년보다 5만 톤 증가한 65만 톤으로 예상됨. 남미 지역 최대 쌀 수입국인 브라질이 수입량을 줄이고 국제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양국의 벼 재배면적은 대폭 줄어든 상태임.

- EU 지역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중단립종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EU에서는 장립종 쌀의 생산비중이 커지고 있음. EU에서 생산된 쌀은 지중해동부 연안국들로 소규모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 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됨으로 인하여 2002/03년 EU 지역의 쌀 기말재고량은 0.9백만 톤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 기타 아시아 지역의 일본, 대만, 한국 등은 쌀 수입국이지만 최근 북한,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대한 원조형태로 소량의 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나. 주요 수입국

- 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시장으로서 2003년에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8.5백만 톤을 수입할 전망이다. 아시아 지역의 쌀 수입량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1998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엘니뇨현상으로 쌀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3백만 톤에 달하는 쌀을 수입한 적도 있었음.
- 인도네시아 : 2002/03년 쌀 생산량은 32.5백만 톤으로, 그리고 2003년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25만 톤 줄어든 3.25백만 톤으로 예상됨. 2000년과 2001년에는 1.5백만 톤 수준이었던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량은 2002년부터 3백만 톤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음. 엘니뇨현상으로 인하여 1997/98년 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1998년에는 쌀 7.1백만 톤을 수입한 기록도 있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의 절반 이상이 자바섬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자바섬을 중심으로 인구증가와 산업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

에 인도네시아의 벼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한편 인도네시아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30kg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인구증가와 함께 쌀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여건 및 소비량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는 당분간 주요 쌀 수입국으로 남아있을 것임.

- 필리핀 : 2002/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8.6백만 톤으로, 그리고 수입량은 전년수준인 1.2백만 톤으로 예상됨. 최근에는 필리핀의 벼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여 쌀이 부족한 실정임. 2003년에도 쌀 소비량이 9.1백만 톤으로 증가하여 생산량보다 0.5백만 톤 많아질 전망이며, 그러나 쌀 수입량이 1.2백만 톤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사상최고 수준인 3.6백만 톤에 달할 것임.
- 방글라데시 : 2002/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0.5백만 톤 늘어난 26백만 톤이고, 2003년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22.5만 톤 늘어난 50만 톤으로 예상됨. 1999년 방글라데시는 2.5백만 톤의 쌀을 수입한 적도 있지만, 90년대 이후 벼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는 쌀 수입량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임.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향후 10년 이상 쌀 수입국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 중국 : 2003년 약 30만 톤의 쌀을 수입할 전망이다. 수입쌀의 대부분은 도시 고소득소비자를 위한 香米를 태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이러한 고품질 특미는 지속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2001년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쌀 2.6백만 톤을 관세할당(TRQ)으로 개방했으며 (장립종 쌀과 중단립종 쌀이 반반), 2004년에는 관세할당량이 5.3백만 톤으로 늘어남. 그러나 현재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중국이 관세

할당량에 해당하는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음.

- 일본 : UR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1995년부터 MMA로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관세화 이후 TRQ 물량으로 2001년 68.2만 톤, 2002년과 2003년은 각각 65만 톤을 수입했으며, 아직까지 TRQ를 초과한 쌀 수입은 없는 실정임. 일본의 쌀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나머지를 태국, 호주, 중국 등에서 들여옴. 이탈리아와 이집트에서도 소량 수입하고 있으며, 가공용 장립종 쌀은 주로 태국에서 수입함. TRQ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1999년 기준 kg당 351.17엔의 종량세를 부과했으며(당시 미국산 쌀 수입가격의 약 5배 수준이었음), 2000년부터 이를 kg당 341엔으로 낮춤.
- 한국 : UR합의에 따른 MMA 쌀 수입량은 1995년 5.7만 톤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5만 톤으로 늘어남. 한국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함으로써 2002년 국내 쌀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5.1백만 톤이었음. 2003년 쌀 기말재고량은 2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001년 한국은 총 14.25만 톤의 쌀을 MMA로 수입했는데, 나라별로는 중국 7만 톤, 미국 3만 톤, 호주 2.25만 톤, 그리고 태국 2만 톤이었음.
- 대만과 북한 : 대만은 WTO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02년에 MMA로 14.5만 톤의 쌀을 수입했으며, 관세화로 이행한 2003년에는 1.28백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TRQ물량으로 12.5만 톤을 수입할 예정임. 북한의 20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5백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쌀이 부족한 실정임. 2003년 북한의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5만 톤 늘어난 45만 톤으로 예상되며, 그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원조형태의 쌀 지원이 될 전망이다.

- 중동지역 : 2003년 역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7백만 톤, 그리고 수입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76백만 톤으로 전망되어 총 소비량의 2/3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중동지역은 미국, 이집트, 호주 그리고 EU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음.
- 이란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1.33백만 톤에 수입량도 전년보다 50만 톤 늘어난 1.5백만 톤으로 예상됨. 기타 중동국가들의 쌀 수입량을 살펴보면 이라크가 전년보다 15만 톤 줄어든 1.1백만 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보다 10만 톤 늘어난 1백만 톤이 될 전망이고, 기타 시리아 15만 톤, 예멘 25만 톤, 그리고 요르단은 전년의 절반수준인 9만 톤을 수입할 전망이다. 터키는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26만 톤으로, 그리고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25만 톤이 될 전망이다. 터키는 일본 다음으로 큰 미국의 중단립종 쌀 수출시장임.
- 아프리카 : 남아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의 2003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2% 증가한 7.2백만 톤으로 예상되며, 쌀 수입량은 전년대비 3% 감소한 6.2백만 톤이 될 것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쌀 수입량이 많은 나이지리아는 2003년 1.7백만 톤의 쌀을 수입할 전망이며,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은 대부분 태국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2001년부터는 인도에서도 수입하고 있음. 쌀 생산이 거의 없는 남아공화국은 인도, 태국, 미국 등에서 65만 톤, 세네갈은 75만 톤, 코트디부아르는 65만 톤, 가나는 22.5만 톤, 그리고 기니아는 3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지역 : 역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 증가한 14백만 톤,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2.75백만 톤으로 예상됨. 역외에서 수입되는 쌀은 대부분 장립종 쌀이고, 남미의 수출국(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다른 남미국가들로 수출하는 쌀은 중단립종 쌀임. 멕시코,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은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남미국가들은 대부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수입하며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부 수입하고 있음.

- 멕시코는 쌀 생산이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 50만 톤을 미국에서 수입할 전망이며, 카리브해 국가들은 생산 57.2만 톤, 수입 98.5만 톤으로 예상됨. 국가별 쌀 수입량은 쿠바 55만 톤, 하이티 26.5만 톤, 도미니칸 공화국 5만 톤 등임.
- 기타 중남미국가들은 생산 45.1만 톤, 수입 38만 톤으로 전망됨.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니카라과는 수입이 감소할 것임. 남미 최대 쌀 수입국인 브라질은 생산 7.15백만 톤에 수입 55만 톤이 될 전망임.
- EU : 역내 쌀 생산량은 2.8백만 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91.1만 톤으로 추정됨.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주요 쌀 생산국이고 북유럽국가들이 주요 쌀 수입국들임. 2003년 EU는 역외에서 85만 톤의 쌀을 수입할 전망이고, 수입량의 대부분이 미국과 태국에서 수입하는 장립종 쌀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basmati 쌀을 일부 수입함.
- 舊소련 : 2002/03년 역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72.4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은 1990/91년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舊소련지역은 쌀 소비량 증가와 재고량 부족으로 인하여 2003년 쌀 수입량이 전년대비 13% 증가한 65.8만 톤으로 전망됨. 역내 국가별 생산 및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생산 32.3만 톤에 수입 35만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생산 12.5만 톤에 수입 17.5만 톤으로 전망됨.
- 미국 : 주요 쌀 수출국이지만, 고품질 香米를 일부 수입하고 있음.

2003년에는 약 41.5만 톤의 쌀을 수입할 전망이며, 이 중 80%는 태국에서 jasmine 쌀을 나머지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basmati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됨.

2. 쌀 재협상 관련국별 현황

- 2004년 쌀 재협상 주요 상대국이 될 미국, 중국, 호주, 그리고 태국의 쌀 시장 현황을 자세히 분석함. 그리고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1999년)과 대만(2003년)의 경험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지만 2004년에 쌀 관세화로의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 필리핀 쌀 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전략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가. 미국 쌀 시장

- 2002/03년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678만 톤으로 예상되며,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 감소한 3.2백만 에이커로서 재배면적 감소는 주로 남부에서 발생하고 있음. 2003년 미국의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한 3.2백만 톤으로, 국내 쌀 소비량도 사상최고 수준인 4백만 톤으로,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25만 톤으로 예상됨.
-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그리고 텍사스 6개주가 미국 쌀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 최대 쌀 재배주인 알칸사스는 2002/03년 벼 재배면적이 11.5만 에이커 줄어든 152만 에이커였으며, 텍사스, 미주리, 루이지애나 등은 재배면적이 약간 줄어들어 각각 20.6만 에이커, 20.1만 에이커, 54만 에이커였음. 한편 캘리포니아는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만 에이커 늘어난 52.3만 에이커를 그리고 미시시피도 1만 에이커

늘어난 24.5만 에이커였음.

- 품종별 재배현황을 보면 알칸사스를 비롯한 중남부는 대부분 장립종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고 있음. 2002/03년 쌀 품종별 생산량을 보면, 장립종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5% 감소한 504만 톤이고 재배면적이 늘어난 중단립종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74만 톤임.
- 미국의 연도별 재배면적 변화현황을 살펴보면, 2002/03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3.21백만 에이커로서 사상최고였던 1999/00년 3.51백만 에이커에 비하면 약 91% 수준임. 쌀 품종별 재배면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장립종 벼 재배면적은 1996/97년에 최저 1.97백만 에이커에서 1999/00년에 최고 2.72백만 에이커로 미국의 전체 벼 재배면적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단립종 벼 재배면적은 2001/02년에 최저 62만 에이커에서 2000/01년 최고 85만 에이커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20-30%를 차지함.
- 한편 2002/03년 미국의 쌀 생산량은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백만 cwt 줄어든 212.01백만 cwt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 품종별 쌀 생산량을 살펴보면 장립종 쌀 생산량은 2001/02년 165.33백만 cwt로 최고를 그리고 1996/97년 113.63백만 cwt로 최저를 기록하여 미국 쌀 생산량의 66-78%를 차지했음. 그리고 중단립종 쌀 생산량은 2000/01년 62.12백만 cwt로 최고를 그리고 1998/99년 45.12백만 cwt로 최저를 기록하여 전체 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34% 정도임. (중단립종 쌀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장립종 쌀보다 많기 때문임.)

<표4> 미국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연도별	재배면적 (백만 에이커)			생산량 (조곡, 백만 cwt)		
	전체	장립종	중단립종 (%)	전체	장립종	중단립종 (%)
95/96	3.09	2.31	0.78 (25.2)	173.87	121.73	52.14 (30.0)
96/97	2.80	1.97	0.84 (30.0)	171.60	113.63	57.97 (33.8)
97/98	3.10	2.31	0.79 (25.5)	182.99	124.49	58.51 (32.0)
98/99	3.26	2.57	0.69 (21.2)	184.44	139.33	45.12 (24.5)
99/00	3.51	2.72	0.79 (22.5)	206.03	151.86	54.16 (26.3)
00/01	3.04	2.19	0.85 (28.0)	190.87	128.76	62.12 (32.5)
01/02	3.31	2.70	0.62 (18.7)	213.05	165.33	47.72 (22.4)
02/03	3.21	n.a.	n.a. (-)	212.01	157.51	54.51 (25.7)

주 : 1 cwt = 조곡 0.0453 톤 = 정곡 0.032 톤

자료: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 2003/04년 미국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7% 감소한 197.2백만 cwt으로 예상됨. 2003/04년에 쌀 생산량이 이처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전년대비 1% 이상 높아져 사상최고를 기록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면적이 3백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7%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임. 품종별 쌀 생산예상량은 장립종 쌀 145.3백만 cwt, 그리고 중단립종 쌀 51.9백만 cwt임. 2003년 캘리포니아 지역의 잦은 비로 인해 파종 면적이 6%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중단립종 쌀 생산 예상량이 감소하게 된 주 원임임.
- 미국이 세계 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1995년에는 2,993천 톤의 쌀을 수출하여 14.39%를, 1998년에는 3,156천 톤 수출에 11.41%를, 2003년에는 3,200천 톤 수출로 12.02%를 차지함.

<표5> 미국의 쌀 수출량 변화

(단위: 천 톤)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세계 수출량	20,800	19,700	18,818	27,670	24,941	22,846	24,442	26,589	26,614
미국 수출량	2,993	2,625	2,304	3,156	2,644	2,847	2,541	3,100	3,200
비중 (%)	14.39	13.32	12.24	11.41	10.80	12.46	10.40	11.86	12.02

자료: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 미국의 쌀 수출량은 1996/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03년 100백만 cwt(정곡기준 3.2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 쌀 수출량을 살펴보면, 장립종 쌀이 79백만 cwt로 79% 그리고 중단립종 쌀이 21백만 cwt로 21%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중단립종 쌀이 미국 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34%인데 반하여 쌀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중단립종 쌀은 장립종 쌀보다 내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6> 미국 쌀 수출 및 재고 현황

연도별	수출량 (백만 cwt)			기말재고량 (백만 cwt)		
	전체	장립종	중단립종 (%)	전체	장립종	중단립종 (%)
95/96	83.24	65.51	17.73 (21.3)	25.04	10.12	14.29 (57.1)
96/97	78.31	57.37	20.93 (26.7)	27.24	14.14	12.13 (44.5)
97/98	87.67	72.25	15.42 (17.6)	27.91	14.52	12.32 (44.1)
98/99	86.84	71.45	15.39 (17.7)	22.08	14.06	6.82 (30.9)
99/00	88.85	70.28	18.56 (20.9)	27.48	15.62	10.43 (38.0)
00/01	83.21	65.32	17.89 (21.5)	28.48	11.64	15.60 (54.8)
01/02	94.08	73.53	20.55 (21.8)	38.95	26.78	10.67 (27.4)
02/03	100.00	79.00	21.00 (21.0)	38.96	25.82	11.63 (29.9)

주 : 1 cwt = 조곡 0.0453 톤 = 정곡 0.032 톤

자료: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 2002/03년 미국의 쌀 기말재고량은 38.96백만 cwt로 추정되어 전년부터 2년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처럼 기말재고량이 늘어난 것은 14-15백만 cwt였던 장립종 쌀 재

고량이 2년 연속 25백만 cwt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며, 중단립종 쌀 재고량은 11.63백만 cwt로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임. 따라서 기말재고량에서 중단립종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연속 30% 이하에 머물고 있음.

- 중단립종 쌀의 경우 기초재고량 34만 톤,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74만 톤, 수입량이 전년대비 7% 감소한 12만 톤으로 2003년 총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3% 늘어난 220만 톤으로 추정됨. 한편 미국내 소비량이 전년대비 1% 증가한 116만 톤이고, 수출량은 전년보다 2% 늘어난 67만 톤으로 기말재고량은 37만 톤이 될 전망이다.
- 미국은 조곡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총 수출량의 30% 이상을 조곡으로 수출함. (2001/02년의 경우 총 수출 94.5백만 cwt 중에서 조곡 수출이 32.2백만 cwt로서 34%였음.) 조곡은 대부분 멕시코와 중미국가, 쿠바, 브라질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기타 조곡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기아나 등이 다른 남미국가로 그리고 호주가 터키로 소규모 수출하고 있음. 멕시코는 미국 최대의 쌀 수출시장으로 정곡보다는 조곡 상태로 교역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산 중단립종 쌀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수출하는 쌀의 절반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됨. MMA로 일본에 수입된 쌀은 전량 정부창고에 보관되어 가공용 및 원조용으로 쓰이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미국산 쌀이 일본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램. 2004년부터 일본 내 44개 쌀 판매점을 통하여 미국산 쌀의 질, 맛, 안전도를 홍보하는 판촉활동을 시작할 계획임.
- 한국은 2001년부터 그리고 대만은 2002년부터 미국산 쌀을 수입

하고 있으나, 양국 모두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 있음. 2002년 기준으로 한, 일, 대만 3개국은 미국 쌀 수출량의 12%에 해당하는 46만 톤을 수입하였음.

- 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고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아서 국내소비량의 12% 정도를 수입하고 있음. 특히 고품질 香米인 jasmine 쌀과 basmati 쌀을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나. 중국 쌀 시장

- 쌀은 중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식량작물로서, 곡물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총 인구의 60%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음. 쌀 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지만, 보통 및 품질이 낮은 장립종 쌀은 재고가 누적되는 반면 품질이 높은 중단립종 쌀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중국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관세할당으로 쌀 수입이 가능해짐. 그러나 국제 쌀 가격이 중국내 쌀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쌀 순수출국이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품질 쌀을 일부 수입하고 있음. 중국의 관세할당량은 2002년 399만 톤, 2004년 532만 톤으로 세계 쌀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며, 만약 중국이 이를 전량 수입하게 되면 국제 쌀 가격은 폭등할 것임.
- 중국은 1980년대 이래 세계 벼 재배면적의 약 23%, 그리고 쌀 생산량의 37%를 차지해 온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임. 중국은 1997/98년 조곡 기준 202.77백만 톤의 쌀을 생산하여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2000/01년에는 조곡 기준 189.81백만 톤을 (이중 중단립종 쌀은

29%), 2001/02년 조곡 기준 179.30백만 톤을, 그리고 2002/03년 조곡기준 176.55백만 톤을 생산하여 매년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중국의 벼 재배면적은 1997/98년 32.13백만 ha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03년에는 전년보다 1백만 ha 줄어든 28.18백만 ha를 기록했음. 2002/03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6,266kg/ha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쌀 생산량도 1997/9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2002/03년에도 전년보다 조곡기준 2.75백만 톤 줄어든 176.55백만 톤을 생산했음.
- 중국의 벼 재배면적 감소는 품질이 낮은 장립종 쌀에 대한 정부의 수매중단으로 장립종 벼 재배면적이 대폭 줄었기 때문임. 반면 중단립종 벼 재배면적은 동북3성과 양쯔강 중하류유역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가 90년대 후반부터는 둔화되고 있음.

<표7> 중국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연도별	재배면적(백만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조곡,백만톤)
1995/96	31.107	6,021.0	187.30
1996/97	31.754	6,205.0	197.03
1997/98	32.129	6,311.1	202.77
1998/99	31.572	6,352.9	200.57
1999/00	31.637	6,334.4	200.40
2000/01	30.301	6,264.2	189.81
2001/02	29.144	6,152.4	179.30
2002/03	28.177	6,265.9	176.55

자료 : FAOSTAT Database

- 중국의 벼 재배면적에서 중단립종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져서 1980년 11%에서 1990년 16%, 그리고 2000년에는

29%로 늘어났음. 특히 90년대 이후 동북3성(지린성, 헤이룽장성, 리오닝성)의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5% 확대되었으며, 이외에도 양쯔강 중하류유역의 지앙수, 제지앙, 안후이 등에서도 장립종 쌀 대신 중단립종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음.

<표8> 동북3성의 쌀 생산량

연 도	헤이룽장 성	리오닝 성	지린 성
1994	316 만톤	293 만톤	410 만톤
1995	262	296	470
1996	339	347	636
1997	286	376	861
1998	379	385	923
1999	415	401	944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01 MMA 수입쌀 도입백서

- 동북3성에서 쌀 재배가 늘어난 이유는 쌀 가격 상승 때문이었음. 1992-94년 쌀 가격은 상승한 반면 콩 가격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콩을 주로 재배하던 헤이룽장성에서는 콩 대신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음. 같은 기간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과 비슷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던 지린성에서는 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1996년 이후에는 헤이룽장성에서는 재배면적에 커다란 변동이 없었으나, 지린성에서는 벼 재배면적이 40% 이상 대폭 늘어났음. 그러나 동북3성은 수리시설의 확충이 없이는 벼 재배면적이 추가로 확대되기는 어려움.
- 한편 중국정부의 쌀에 대한 정책변화가 양쯔강 중하류유역에서 중단립종 벼 재배면적을 증가시켰음. 1999년 중국정부는 저품질 쌀에 대한 수매정책을 중단했는데, 이로 인하여 저품질 조생장립종 쌀을 재배하던 양쯔강 유역에서 중단립종 쌀로 대체재배하기 시작함. 그 결과 2001년 지앙수성은 벼 재배면적의 80%를 중단립종 쌀이 차지함.

- 중국의 쌀 수요는 1인당 평균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 소비패턴이 고품질, 고영양 품종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어 중단립종 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2000/01년 중국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32% 증가한 144.06백만 톤이었는데, 이중 중단립종 쌀 소비가 60.56백만 톤으로 42%를 차지했음. 쌀 공급총량은 수요총량을 초과하고 있지만, 보통 및 저품질 쌀의 재고 누적과 고품질 쌀의 상대적 부족 등 품종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중단립종 쌀 수요가 증가하는 한 가지 이유는 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임. 종래 도시에서는 중단립종 쌀을 소비했으나 농촌에서는 쌀 소비가 거의 없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중단립종 쌀을 소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다른 이유로는 북부에서 남부로의 인구이동과 범국가적인 판매망이 확보됨에 따라 남부에서도 질 높은 중단립종 쌀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임. 그리고 북부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의 브랜드가 품질이 좋은 것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고, 전국 각지의 슈퍼마켓에서 질 높은 브랜드 쌀을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중단립종 쌀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임.
- 중단립종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동안에는 생산 증가 속도가 수요증가 속도보다 빨라서 동북지역에서만 중단립종 쌀 재고량이 20백만 톤에 달하고 중국내 쌀 가격은 하락하고 있음. 중국내 쌀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빈약한 인프라로 인하여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이 활발하지 못함. 예를 들면 쌀 생산지 헤이룽장성에서 수출항구 상하이까지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톤당 25달러 정도임.
- 과거 중국산 중단립종 쌀은 미국산이나 일본산 쌀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조곡의 질도 낮고 또 도정기술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임. 최근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품종개량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단립종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도정기술 향상을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기업들과 합작투자로 일본과 스위스에서 최신기계를 도입, 새로운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이 도정공장들은 새로운 기술, 품질관리, 생산방법 등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농가에 대한 종자보급, 영농비 지원, 농약과 비료 대부 등을 통해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음. 나아가 기업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하여 쌀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경영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쌀은 중국의 주요 수출작물로서 낮은 생산비와 품질향상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쌀 수출량이 세계 총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5년 32천 톤으로 0.15%, 1996년 265천 톤으로 1.35%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는 3,754천 톤에 13.49%를 차지했고 2000년 이후에는 수출량은 2,000천 톤 내외에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9> 중국의 쌀 수출량 변화

(단위: 천 톤)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세계수출량	20,800	19,700	18,818	27,670	24,941	22,846	24,442	26,589	26,614
중국수출량	32	265	938	3,734	2,708	2,951	1,847	1,750	2,250
비중 (%)	0.15	1.35	4.98	13.49	10.86	12.92	7.56	6.58	8.45

자료: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 중국의 중단립종 쌀 수출량은 1999년, 2000년, 2001년 각각 53.44만 톤, 58.07만 톤, 35.18만 톤으로 당해연도 생산량의 1.53%, 1.74%, 1.10%를 차지했음. 중단립종 쌀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한국, 일본, 대만, 북한이며 최근에는 중동과 유럽 등에도

일부 수출함. 북한은 수입전량을 그리고 일본은 수입량의 90%를 정곡으로 수입하는데 반해 한국은 99% 이상을 현미로 수입함.

- 2000년 중국은 아시아 3대 중단립종 쌀 수입시장인 한국, 일본, 대만에 21.6만 톤을 수출하여 약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음.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제품 쌀 생산은 환경 및 건강을 중요시하는 한국, 일본, 대만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임. 아시아 이외 지역으로는 터키와 이집트가 중단립종 쌀 수입량이 많은 국가이며, 터키의 경우 쌀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음.
- 중국의 중단립종 쌀은 생산비와 재배기술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품질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님. 현재 중국의 각 성에서는 최신 쌀 가공설비를 도입하고 친환경 쌀 및 유기 쌀 생산을 확대하는 등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용두기업을 중심으로 쌀 산업화 움직임과 우수품질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등으로 쌀 농업은 새로운 발전계기를 맞고 있음.
- 2010년까지 중국의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재배면적은 연평균 1.35% 감소하여 2010년에는 28.72백만 ha로 줄어들 전망임. 그러나 기술진보와 생산여건의 개선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쌀 생산량은 연평균 0.74% 증가하여 2010년에는 138.24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쌀 교역에서 중국은 수입량 감소와 수출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임. 수입량은 연평균 6% 감소하여 2010년에 122천 톤으로 줄어들고, 수출량은 연평균 5.76% 증가하여 2010년에 4,385천 톤으로 늘어날 전망임. 특히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소비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낮은

생산비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함께 중국의 쌀 수출 여력은 더욱 증가할 것임.

<표10> 중국의 쌀 수급 전망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배면적 (천ha)	29428	29423	29386	29313	29182	29041	28883	28720
생산량 (백만톤)	131.26	133.08	134.77	136.29	137.17	137.70	138.02	138.24
수입 (천톤)	188	160	147	133	130	128	125	122
수출 (천톤)	2962	3399	3672	4034	4099	4178	4277	4386
식량소비(백만톤)	113.88	113.40	113.08	112.93	113.02	113.18	113.34	113.49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중국 쌀 산업의 현황과 전망

다. 호주 쌀 시장

- 1950년대 이후 호주의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1/02년부터 2년 연속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2002/03년 호주의 쌀 생산량은 정곡기준 75.1만 톤에 불과함. 호주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약 2,500호 정도에 불과하지만,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400 ha 그리고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ha당 8,000kg 이상으로 세계최고 수준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400ha로 매우 크지만 5-7년 주기로 윤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호당 벼 재배면적은 60-80ha 수준임. 품종별 쌀 생산량은 중단립종 쌀이 80%, 香米를 포함한 장립종 쌀이 20%를 차지함.
- 호주의 쌀 재배는 New South Wales주의 리베리나 평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개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과거 퀸즈랜드주 북부지역에서 소규모로 쌀이 생산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사탕수수 경작지로 전환되어 더 이상 쌀을 생산하지 않고 있음. 호주의 벼 재배면적은 2001/02년에 17.7만 ha로 가장 많았으며, 2002/03년에는 15만 ha로 감소했음. 벼 재배면적이 작기 때문에 쌀 생산량도 그리 많

은 편은 아님.

<표11> 호주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연도별	재배면적(천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조곡, 천톤)
1995/96	118.89	8,544.1	1,015.8
1996/97	136.51	7,073.9	965.6
1997/98	164.00	7,650.1	1,254.6
1998/99	141.20	9,425.6	1,330.9
1999/00	151.70	9,161.5	1,389.8
2000/01	133.30	8,257.3	1,100.7
2001/02	177.00	9,282.5	1,643.0
2002/03	150.00	8,500.0	1,275.0

자료 : FAOSTAT Database

- 한편 호주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1998/99년에는 9,400kg/ha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2002/03년에도 8,500kg/ha이었음. 이를 중국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6,200kg/ha와 비교하면, 약 35%이상 높은 수준임. 2001/02년에 조곡기준 1,643천 톤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2002/03년에는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모두 줄어들어 쌀 생산량은 1,275천 톤으로 대폭 감소했음.
- 호주는 생산한 쌀의 15%만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85%를 중동, 일본, 홍콩 등 40여 개 국가로 수출함. 따라서 2003년에도 50만 톤을 수출할 전망이며, 호주가 세계 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지만 세계 쌀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3.4% 수준임. 최근 호주의 국내 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표12> 호주의 쌀 수출량 변화

(단위: 천 톤)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세계수출량	20,800	19,700	18,818	27,670	24,941	22,846	24,442	26,589	26,614
호주수출량	519	562	641	547	667	617	618	400	500
비중 (%)	2.50	2.85	3.41	1.98	2.67	2.70	2.53	1.50	1.88

자료: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 호주는 1997년과 1999년-2001년에는 6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출 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수출량이 50만 톤 이하로 감소 함. 호주의 쌀 수출은 쌀 생산자들이 설립한 식품회사인 SunRice 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짐. 2000년 쌀 가공공장을 4개로 통 폐합하는 구조조정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음.

라. 태국 쌀 시장

- 태국은 고온다습성 열대기후로 관개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1년 2작(일부 3기작) 가능하고, 낮은 노임과 적은 생산자재 투입으로 쌀 생산비가 매우 낮음. 북부고지대에서는 중단립종 쌀과 찰쌀을 소량 재배하며, 재배면적의 80% 정도가 천수답으로서 기후변화와 병충해로 인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낮음.
- 태국 벼 재배면적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03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9.99백만 ha에 달하였음. 그러나 2002/03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2,597kg/ha로서 같은 해 세계 평균 3,916kg/ha에 비하면 약 70% 수준에 불과함. 2002/03년 태국의 쌀 생산량은 사상최고였던 전년보다는 조곡기준 1백만 톤이 줄어든 25,945천 톤으로 추정됨.

<표13> 태국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재배면적(천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조곡,천톤)
1995/96	9,113	2,415.8	22,016
1996/07	9,267	2,409.7	22,332
1997/98	9,913	2,354.5	23,340
1998/99	9,512	2,465.4	23,450
1999/00	9,970	2,424.5	24,172
2000/01	9,761	2,623.5	25,608
2001/02	9,990	2,698.1	26,954
2002/03	9,990	2,597.1	25,945

자료 : FAOSTAT Database

- 태국은 세계 제1의 쌀 수출국으로 주로 장립종 쌀을 수출하며, 소량의 향미를 수출하고 있음. 태국의 쌀 수출량이 세계 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안팎으로 1998년에는 23.01%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1년에는 다시 30.77%까지 올랐음. 한국과 일본은 주로 중단립종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일부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장립종 쌀은 그 대부분을 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한국이 태국에서 수입하는 장립종 쌀은 연간 20천 톤 내외로서 태국의 쌀 총수출에서 0.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표14> 태국의 쌀 수출량 변화

(단위: 천 톤)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세계수출량	20,800	19,700	18,818	27,670	24,941	22,846	24,442	26,589	26,614
태국수출량	5,891	5,281	5,216	6,367	6,679	6,549	7,521	6,500	8,000
비중 (%)	28.32	26.81	27.72	23.01	26.78	28.87	30.77	24.45	30.01

자료: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마. 일본 쌀 시장

- 일본은 UR 합의에 의거 1995년부터 MMA로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쌀 관세화로 이행함으로써 의무수입량 증가

폭이 당초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2003년에는 65만 톤을 관세 할당(TRQ)으로 수입할 예정임.

- 관세화 당시 kg당 351.17엔의 종량세를 (당시의 가격 및 환율 기준으로 증가세 환산하면 약 650% 정도) 부과했으며, 2000년부터는 이를 kg당 341엔으로 낮추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2001년 중반이후 국제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종량세를 증가세로 환산하면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TRQ를 초과하는 쌀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일본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에서 주로 쌀을 수입하고 있음. 일본 수입쌀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1995년 7.9%에서 2001년 17.88%로 늘어났고, 미국은 47% 수준을 유지하고, 호주는 1995년 21.3%에서 2001년 14.7%로 그리고 태국은 1995년 23.3%에서 2001년 19.1%로 낮아짐.
- UR 합의에 따른 관세화 유예 만료기간(2000년 말)이 끝나기 전인 1998년 12월 일본은 관세화로 이행을 결정하고 1999년부터 관세화로 이행하였음. 당시 일본은 2001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국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상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추가적인 양허조치가 필요했으며, 2000년까지는 매년 최저수입(MMA) 물량을 국내소비량의 0.8%에 해당하는 쌀 76천 톤 씩을 늘여야 했음. 만약 유예기간 만료 전에 관세화로 이행할 경우에는 2000년까지 최저수입물량의 증대 폭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절반에 해당하는 쌀 38천 톤 씩 증대시킬 수 있음.

<표15> 일본의 1995-2001 쌀 수입실적

(단위 : 천 톤)

연도별	계	미국 (%)	태국 (%)	호주 (%)	중국 (%)	기타 (%)
1995	408.9	193.8 (47.4)	95.3 (23.3)	87.0 (21.3)	32.4 (7.9)	0.4 (0.1)
1996	465.8	215.2 (46.2)	128.0 (27.5)	81.2 (17.4)	40.1 (8.6)	1.2 (0.3)
1997	544.4	272.6 (50.1)	134.8 (24.8)	85.6 (15.7)	43.9 (8.1)	7.5 (1.4)
1998	632.5	301.9 (47.7)	135.3 (21.4)	101.6 (16.1)	72.0 (11.4)	21.7 (3.4)
1999	653.2	312.9 (47.9)	142.0 (21.7)	104.6 (16.0)	76.6 (11.7)	17.2 (2.6)
2000	693.1	330.3 (47.7)	149.3 (21.5)	108.3 (15.6)	88.3 (12.7)	16.9 (2.4)
2001	680.1	324.1 (47.7)	127.8 (19.1)	100.0 (14.7)	121.3 (17.8)	4.9 (0.7)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1995년부터 MMA 수입된 쌀 재고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가공용 및 해외원조 등으로 113만 톤을 소비했지만 1998년 10월에는 수입쌀 재고량이 42만 톤에 달하였음. 여기에다 2001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MMA 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관세화 유예시 2000년 MMA 수입쌀은 758천 톤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재협상에서 MMA 물량이 상당수준 늘어날 것임), 수입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증대한 것이 일본이 관세화를 선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였음. 예정보다 2년이 빠른 1999년 관세화로 이행했기 때문에, 2000년 최저수입물량인 TRQ 쌀 수입량은 기준년도 평균소비량의 7.2%에 해당하는 682천 톤으로 줄어듬.
- 일본이 1999년부터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로운 쌀 정책’이 199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5년부터 SBS방식에 따른 쌀 수입경험을 통하여 관세수준을 사전 추정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임.
- 일본의 쌀 수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OMA (ordinary market access)방식은 일본 식량청이 수입하여 가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량은 원조용 등으로 비축하는 방식이며, SBS(simultaneous buy and sell)방식은 식량청 주관의 경쟁입찰에서 쌀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도매)가격의 차이가 큰 업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도매상들에게 수입물량을 배분하여 수입하는 방식임. SBS방식은 구매자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쌀을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SBS방식으로 수입된 쌀에 걸맞은 정부 국산쌀을 원조용 등으로 전환함.

<표16> 일본 쌀 수입시장 점유현황

연도별	수입방식 비율 (%)		OMA수입 국가별점유율 (%)				SBS수입 국가별점유율 (%)			
	OMA	SBS	미국	태국	호주	중국	미국	태국	호주	중국
1995	97.4	2.6	47.2	23.9	21.4	7.5	53.4	2.3	18.1	22.3
1996	95.3	4.7	45.3	28.8	18.0	7.9	64.2	1.6	5.3	23.2
1997	89.9	10.1	48.6	27.4	16.8	6.1	62.9	1.7	5.7	25.2
1998	81.0	19.0	51.8	25.4	17.0	2.0	30.4	4.4	12.1	51.6
1999	81.6	18.4	51.8	25.9	16.9	2.6	30.7	3.1	12.2	52.2
2000	82.7	17.3	49.6	25.2	16.4	6.1	38.6	4.1	11.9	44.4
2001	85.3	14.7	51.5	22.3	15.8	9.6	25.2	0.4	8.5	65.7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일본 쌀 수입에서 OMA 방식으로 수입되는 쌀의 비중은 1995년 97.4%에서, 1998년에 81.0%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2001년에는 85.3%를 차지함. SBS방식의 쌀 수입량은 1995년 1만 톤으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12만 톤까지 늘었으나, 2000년부터는 10만 톤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MA방식에 의한 수입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미국이 51.5%를 차지하여 가장 점유율이 높고, 다음으로 태국이 다소 줄어든 22.3%, 호주도 약간 줄어든 15.8%, 그리고 중국은 다소 늘어난 9.6%를 차지함. 그러나 SBS방식에 의한 수입국별 점유율은 상당히 다름. 중국이 1995년 22.3%에서 2001년 65.7%로 대폭 늘어난 반면, 미국은 동 기간 중 53.4%에서 25.2%로 낮아짐. 이처럼 일본 쌀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쌀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때문임.

-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도정기술의 발달로 중국산 쌀의 품질이 미국산 또는 일본산 쌀에 근접해졌음.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비를 비교하면, 집약적 쌀 농사를 짓는 중국이 미국보다 인건비는 높지만, 총 생산비에서는 중국이 캘리포니아의 절반수준임.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격이 높은 고품질 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시키는 결과임. 따라서 태국산 香米와 인도산 basmati 쌀이 MMA 이외로 소량 (연간 100톤 정도) 수입되고 있음.
- 다 같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쌀이지만, 일본이 수입하는 쌀은 한국이 수입하는 쌀보다 품질이 높음.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아 가격이 높은 미국산 또는 호주산 쌀은 그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임. WTO가입으로 2002년부터 MMA로 쌀을 수입하기 시작한 대만은 정부가 65%를, 나머지를 민간이 수입하고 있음.

바. 대만 쌀 시장

- 2002/03년 대만은 재배면적 288천 ha에서 최근 3년 평균대비 9% 감소한 1.14백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됨. 한편 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1.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대만은 1998년 2월 WTO 가입협상을 시작하면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함. 즉 MMA 쌀 수입을 1995년에 기준년도 (1990-92년) 평균소비량의 4%에서 매년 0.8%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00년에는 8%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입하기로 함. 그러나 WTO 가입협상이 지연되면서 2000년 이후 MMA 쌀 수입량은 8%를 유지하였고, 2002년 1월 WTO 회원국이 되었

음.

- 최근 대만의 쌀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1997-99년 3년 동안 대만은 정부가 보관하던 묵은 쌀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아프리카국가에 연평균 10만 톤을 수출하기도 함. 대만정부는 국내 쌀 생산 감축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2000년 115천 톤, 그리고 2001년 126천 톤의 쌀을 수입함으로써 WTO 가입에 대비하였음.
- 대만은 WTO에 가입하던 2002년에 기준년도 평균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126천 톤을 MMA로 수입했으며, 2002년 MMA 수입량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69%였음. 그러나 대만은 2003년에 MMA 수입물량을 늘리고 관세화 유예조치를 지속하는 대신 관세화로의 이행을 선택했으며, 관세화로 이행하면서 TRQ 수입물량을 2002년과 동일한 126천 톤으로 책정함. 2003년 현재 대만은 TRQ를 초과하는 쌀 수입에 대해서는 NT\$45/kg의 종량세를 부과함. 한편 TRQ 수입량 중 65%는 정부에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업자에게 입찰을 통해 수입허가권을 배분함.
- 대만의 쌀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 기간 쌀 소비량도 비슷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TRQ 물량만 수입하더라도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17> 대만의 쌀 수급전망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배면적 (천 ha)	241	232	223	216	210	204	199
생산량 (천 톤)	1013	986	964	946	930	916	904
소비량 (천 톤)	1151	1123	1100	1081	1065	1052	1039
수입량 (천 톤)	126	126	126	126	126	126	126

자료 : FAOSTAT Database

사. 필리핀 쌀 시장

- 2002/03년 필리핀 쌀 생산량은 지속적인 재배면적 증가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1998/99년 이래 4년 연속 증가하여 8,626천 톤을 기록했음. 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4,064천 ha를 그리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3,279.7kg/ha이었음.

<표18> 필리핀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재배면적(천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천톤)	수입량(천톤)
1995/96	3,759	2,804.3	6,851	240
1996/07	3,951	2,855.8	7,334	906
1997/98	3,842	2,932.6	7,325	731
1998/99	3,170	2,698.4	5,561	2,126
1999/00	4,000	2,946.8	7,661	782
2000/01	4,038	3,068.1	8,053	617
2001/02	4,065	3,186.6	8,421	739
2002/03	4,064	3,279.7	8,626	1,238

자료 : FAOSTAT Database

- 필리핀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5%로서 아직 높은 편이고, 2002년 1인당 쌀 소비량은 99kg으로 다른 동남아국가들의 1인당 쌀 소비량 120-140kg보다 낮은 수준임. 1인당 소비량이 주변국들보다 낮은 것은 소득은 낮고 쌀 가격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필리핀의 쌀 가격은 베트남과 태국 쌀 가격의 약 2-3배임), 필리핀의 쌀 소비는 아직 증가할 여력이 많음. 이처럼 필리핀은 쌀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쌀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2년 경우 소비량은 9.1백만 톤이고 생산량은 8.6백만 톤임), 이러한 쌀 부족현상을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음. 엘니뇨 피해가 심각했던 1998/99년의 경우에는 2백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한 적도 있으며, 생산량이 증가한 2002년에도 1.2백만 톤의 쌀을 수입했음.

<표19> 기간별 필리핀 쌀 수입량 비중

기간별 (평균)	1975-79	1980-89	1990-99	2000-01
수입량/총공급량 (%)	1.13	1.73	7.31	8.09

주 : 총공급량 = 생산량 + 수입량

자료 : BAS, Philippine

- 2002년 필리핀의 쌀 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4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 31.5%, 미국 3.3%, 태국 2.2%, 중국 2.1%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11.2%를 차지했음.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고, 2005년 이후에는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로의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임.
- 필리핀 쌀 수입은 국가식량청(NFA)에서 수입업자들에게 수입권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 배정과정에서의 권력개입과 부정부패로 인하여 질 낮은 쌀을 수입하여 비싼 값에 판매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음. 최근 NFA의 쌀 수입권한의 민영화와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개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수입쌀에 부과한 관세수입을“쌀 재배농민 발전기금”으로 모아 관개시설, 농장-시장간 도로 확충, 농업장비 및 시설, 연구 및 시장정보 등을 공급하는데 이용하자는 법안이 상원에 제출됨.
- UR 합의에 따른 필리핀의 MMA 쌀 수입량이 2002년에 390천 톤 임에 비추어 본다면, 필리핀은 1995년 이후 계속해서 MMA 수입량을 초과하여 쌀을 수입하고 있고, 국내 쌀 가격이 주변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태국보다 2-3배 높음.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MMA 수입량만을 들여오고 있지만 점차 수입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쌀 가격이 미국이나 중국 쌀 가격의 5배 또는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재협상에 임하는 처지가 다른 면이 있음.

<부록> UR농업협정문(쌀관세화 관련 부분)

Part III

Article 4 - Market Access

1. Market access concessions contained in Schedules relate to bindings and reductions of tariffs, and to other market access commitments as specified therein.
2. Members shall not maintain, resort to, or revert to any measures of the kind which have been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³⁾,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5 and Annex 5 hereof.

Part III

제4조 : 시장접근

1. 이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장개방양허에는 관세의 양허와 감축, 이행계획에 제시된 기타 시장접근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2. 회원국들은 본협정문 5조와 부속서 5에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관세로의 전환이 요청된 조치⁴⁾

3) These measures include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variable import levies, minimum import prices, discretionary import licensing, non-tariff measures maintained through state trading enterprise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nd similar border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 whether or not the measures are maintained under balance-of-payments provisions or under other general, non-agriculture-specific provisions of the GATT 1994 or of the othe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Annex 1A to the MTO.

4) 이러한 조치에는 수입물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자의적인 수입허가증 발급, 국영무역을 통한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GATT 1947 규정하에 인정된 국별의무면제를 막론하고 일반관세이외의 유사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다. 단 국제수지규정 또는 GATT 1994 내지 MTO 부속서 1A하의 일반적/비농업특정적 규정하에 유지되는 조치는 제외한다.

Annex 5

SPECIAL TREATMENT UNDER ARTICLE 4:2

Section A

1. The provisions of Article 4:2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with effect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any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and its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designated products") in respect of which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hereinafter referred to as"special treatment"):

(a) imports of the designated products comprised less than 3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1986–1988("the base period");

(b) no export subsidies have been provi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base period for the designated products;

(c) effective production restricting measures are applied to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d) such products are designated with the symbol "ST–Annex 5" in Section IB of Part I of a Member's Schedule annexed to the Uruguay Round(1994) Protocol as being subject to special treatment reflecting factors of non–trade concerns, such as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correspond, as specified in Section IB of Part I of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to 4 per cent of base period domestic consumption of the designated products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are increased by 0.8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per year for the remainde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2. At the beginning of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 Member may cease to apply special treatment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by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below. In such a case, the Member concerned shall maintain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already in effect at such time and increase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by 0.4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per year for the remainde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reafter, the level of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formula in the final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maintaine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3.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1 above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tself as a part of the negotiations set out in Article 20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of non-trade concerns.
4. If it is agree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above that a Member may continue to apply the Member concerned shall impleme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below. In such a case,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for the designated products shall be maintained at the level of 8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부속서 5
4조 2항하의 특별취급

(Section A)

1. 본 협정문의 4조2항은 다음 조건에 합치되는 특정 주요농산물과 그 가공 및 관련 조제품(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협정발효후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a) 선정된 해당품목의 수입이 1986~88 기준기간 동안의 국내 소비량의 3% 미만 일 것

(b) 기준기간 이후 선정된 해당품목에 대하여 수출보조가 제공되지 않을 것

(c) 해당 1차 농산물에 효과적인 생산통계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

(d) 특별취급품목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의 반영으로서, 1994 우루과이라운드 의정서에 부속된 각 회원국의 이행계획서 Part I Section IB "ST-Annex 6"로 표시하여 선정한다.

(e) 관련 회원국의 이행계획서 Part I Section IB에 제시된 특별취급품목과 관련하여 최소접근기회는 이행초기년도에 선정된 해당 품목 국내소비량의 4%에 상응하는 접근기회를 설정하고 그 후부터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0.8%씩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2. 이행기간 중 임의의 특정년도 초에 회원국은 아래 6항에 일치하여 선정된 해당 품목에 대한 특별취급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해당국은 그 기간 까지 실제로 이행된 최소접근기회를 유지시켜야 하며, 잔여 이행기간동안 최소접근 기회를 매년 0.4%씩 증가시켜야 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부터 결과 되는 최종년도의 최소 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3. 이행기간의 종료이후, 위 1항에서 설정된 특별취급의 연장여부 문제에 관한 협상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본협정 제20조에 제

시된 협상의 일부로서 이행기간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4. 만일 위의 3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로서 특정국이 특별취급을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그런 회원국은 해당협상에서 결정된 대로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
5. 이행기간 종료시점에서 특별취급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아래 6항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 경우, 이행기간 종료후 선정된 특별취급 대상품목의 최소접근 기회는 해당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 나타난 기준기간동안의 국내소비량의 8%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6. Border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 maintained in respect of the designated products shall becom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2 of this Agreement with effec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which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Such products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which shall be boun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and applied,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which special treatment ceases and thereafter, at such rates as would have been applicable had a reduction of at least 15 per cent been implemented over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hese duties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ariff equivalents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ttachment hereto.

Section B

7. The provisions of Article 4:2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not apply with effect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o a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that is the predominant staple in the traditional diet of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nd in respect of which the following conditions, in addition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a) through 1(d) above, as they apply to the products concerned, are complied with: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products concerned, as specified in Section IB of Part I of the Schedule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ed, correspond to 1 per cent of base period domestic consumption of the products concerned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the sixt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in respect of the products concerned correspond to 2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and are increase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o 4 per cent of correspond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base period until the beginning of the tenth year. Thereafter, the level of minimum access opportunities resulting from this formula in the tenth year shall be maintained in the Schedule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ed.

appropriate market access opportunities have been provided for in other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8. Any negotiation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can be a continu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 as set out in paragraph 7 above after the end of the ten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within the time-frame of the tenth year itself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9. If it is agree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above that a Member may continu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such Member shal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 as determined in that negotiation.
10. In the event that special treatment under paragraph 7 above is not to be continued beyond the tenth year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products concerned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tariff equivalent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ttachment hereto, which shall be bound in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In other respect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above shall apply as modified by the relevan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ccorded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under this Agreement.

6. 선정된 특별취급품목과 관련하여 유지되고 있는 통상관세이외 국경 조치는 특별취급적용이 종료되는 연도초부터 본협정문의 제 4조 2항의 적용을 받는다. 특별취급이 종료되는 품목들은 종료후 최초년도부터 통상관세가 부과되는데, 동관세는 해당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 양허될 것이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이행기간동안 매년 균등 감축을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최소 15%감축률이 적용될 것이다. 이 관세는 이하에 부속된 계산지침에 의해 계산된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Section B)

7. 본협정문의 4조 2항은 앞서 언급한 1항(a)부터 1항(d)의 조건을 만족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도회원국의 전통적 식품소비패턴상 매우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 협정발효후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개도회원국의 이행계획서 Part I의 Section IB에 제시된 해당품목의 최소접근기회는 이행년도 초기년도에 해당품목의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 5차년도까지는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2%까지 매년 균등률로 증가시킨다. 이행기간 6차년도부터 해당품목의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 국내소비량의 2%부터 매년 균등률로 증가시켜 이행기간 10차년도 초까지는 4%로 증가시킨다. 그이후 10차년도에 동공식으로부터 결과되는 최소접근 기회 수준은 해당 개도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 유지되어야 한다. 본협정문하의 여타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8. 이행초년부터 최종년도까지 위 7항에 제시된 특별취급의 연장여부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초부터 말까지의 기간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한다.

9. 위 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로서 회원국의 특별취급 적용을 계속하기로 합의할 경우, 그런 회원국은 해당 협상에서 결정한 바 대로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

10. 위 7항하의 특별취급이 이행초기년도 이후 10년차 이전에 계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품목은 이하에 첨부된 지침에 따라 계산된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통상관세가 적용되고 해당회원국의 이행계획서상에서 양허되어야 한다. 또한 위 6항의 규정은 본협정문하개도회원국에 부여된 적절한 우대조치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Attachment to Annex 5

Guidelines for the Calculation of Tariff Equivalents for the Specific Purpose Specified in Paragraphs 6 and 10 of this Annex

1. The calculation of the tariff equivalents, whether expressed as ad valorem or specific rates, shall be made using the actual differenc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rices in a transparent manner. Data used shall be for the years 1986 to 1988. Tariff equivalent:
 - (i) shall primarily be established at the four-digit level of the HS;
 - (ii) shall be established at the six-digit or a more detailed level of the HS wherever appropriate;
 - (iii) shall generally be established for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by multiplying the specific tariff equivalent(s) for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by the proportion(s) in value terms or in physical terms as appropriate of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orked and/or prepared products, and take account, where necessary, of any additional elements currently providing protection to industry.

2. External prices shall be, in general, actual average c.i.f. unit values for the importing country. Where average c.i.f. unit values are not available or appropriate, external prices shall be either:
 - (i) appropriate average c.i.f. unit values of a near country;
 - or
 - (ii) estimated from average f.o.b. unit values of (an) appropriate major exporter(s) adjusted by adding an estimate of

insurance, freight and other relevant costs to the importing country.

3. The external prices shall generally be converted to domestic currencies using the annual average market exchange rate for the same period as the price data.
4. The internal price shall generally be a representative wholesale price ruling in the domestic market or an estimate of that price where adequate data is not available.
5.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s may be adjusted, where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differences in quality or variety using an appropriate coefficient.
6. Where a tariff equivalent resulting from these guidelines is negative or lower than the current bound rate, the initial tariff equivalent may be established at the current bound rate or on the basis of national offers for that product.
7. Where an adjustment is made to the level of a tariff equivalent which would have resulted from the above guidelines, the Member concerned shall afford, on request, full opportunities for consultation with a view to negotiating appropriate solutions.

부속서 5에 대한 첨부물

본 부속서의 6항과 10항과 관련한 관세상당치 계산을 위한 지침

1. 종가세 혹은 종량세로 표시된 관세상당치의 계산은 명료한 방법으로 실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료의 기준연도는 1986 ~ 1988년도가 된다. 관세상당치는,
 - (i) 원칙적으로 HS 4단위 수준에서 산출하되,
 - (ii) 적절한 경우, HS 6단위 혹은 보다 세분된 수준에서 계산할 수 있다.
 - (iii) 가공 및 관련 조제품은 동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1차 농산물의 관세상당치에 함유비율(금액비율 또는 물리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필요시 현행 산업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임의의 추가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2. 외부가격(국제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단위당 실제 평균 cif가격을 사용한다. 단위당 평균 cif가격이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할 경우 외부가격은
 - (i) 인접국의 적절한 단위당 평균 cif가격이나 혹은
 - (ii) 주요 수출국의 단위당 평균 래깅가격에 보험, 운임 및 기타 수입국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가산하여 추정한다.
3. 외부가격(국제가격)은 사용된 가격자료의 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의 연평균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국내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4. 국내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적 도매가격을 사용하되, 동 가격자료의 적절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가격의 추정가격을 사용한다.
5. 최초 관세상당치는 품질 혹은 품종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적절한 계수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산출된 관세상당치가 음(-)이거나 혹은 현행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초 관세상당치는 현행 양허관세율이나 해당품목에 대한 국별 offer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다.
7. 위의 지침에 따라 산출된 관세상당치 수준을 조정하였을 경우, 해당 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